

제391회국회
(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경제재정소위원회)

제 3 호

국회사무처

일 시 2021년11월23일(화)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443)
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454)
3.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905)
4.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457)
5.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655)
6.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929)
7.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251)
8.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547)
9.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680)
10.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687)
1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178)
1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785)
13.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284)
14.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316)
15.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119)
16.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683)
17.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940)
18.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778)
19.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471)
20.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206)
2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499)
2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472)
23.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565)
24.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356)
25.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062)
26.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679)
27.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013)
28.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079)
29.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636)
3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634)
3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653)
32. 국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337)
33.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358)

34.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329)
35.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665)
36.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853)
37.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003)
3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407)
3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009)
4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666)
4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703)
4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991)
4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227)
4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735)
4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215)
4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311)
4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579)
4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710)
4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115)
5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203)
5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846)
5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951)
5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072)
5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574)
5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909)
5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955)
5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086)
5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025)
59. 재정건전화법안(의안번호 2100096)
6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229)
6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265)
62. 재정건전화법안(의안번호 2101270)
6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994)
6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244)
6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764)
6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541)
6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825)
6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899)
69. 국가채권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446)
70.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540)
71.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647)
72.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915)
73.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076)
74.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438)
75.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551)
76.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437)
77.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572)

78.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913)
7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724)
8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943)
8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952)
8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055)
8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391)
8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274)
8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061)
8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156)
8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209)
8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514)
8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066)
9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985)
9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525)
9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841)
9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156)
9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270)
9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822)
9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483)
97.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790)
9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080)
9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068)
10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451)
10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034)
102.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242)
103.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339)
104. 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744)
105.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112)
106.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906)
107.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342)
108.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466)
109.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798)
110.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464)
111.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806)
112.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376)
113.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377)
114. 국가채권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378)
11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379)
116. 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382)
11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158)
118.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159)
119.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298)
120.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300)
121.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557)

12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558)
 123.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566)
 124.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584)
 125.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586)

상정된 안건

5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46)	4
5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51)	4
5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72)	4
5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74)	4
5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909)	4
5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955)	4
5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086)	19
5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7025)	19
59. 재정건전화법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096)	19
6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229)	19
6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265)	19
62. 재정건전화법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270)	19
6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희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994)	19
6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44)	19
6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64)	41
6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41)	41
6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25)	41
6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낙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99)	41

(10시14분 개의)

○소위원장 류성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1회 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제3차 경제재정소위원회회를 개최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 5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46)
5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51)
5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72)
5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74)
5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909)
5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

표발의)(의안번호 2105955)

○소위원장 류성걸 의사일정 제51항부터 제56항까지 이상 6건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정연호 수석전문위원께서 심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연호 의사일정 51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전문기관을 통한 국가재정운용계획 평가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행 국가재정법에 따라 정부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용은 5회계연도 이상 기간에 대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수립했을 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날짜로 치면 9월 3일까지가 되겠습니다—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정기회 개최 전까지로 8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하는데 이 계획을 제출할 때 전년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한 평가 실시 및 평가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

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의 개정 내용은 이러한 평가를 재정 사업 평가 등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기관, KDI 또는 조세재정연구원에 맡기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첫째, 예산안·결산 심사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연계성 강화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다 거시적이고 종합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한 기본 틀로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둘째, 전문기관 평가를 통해 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고려할 사항으로 현행에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첨부서류로 전년도에 수립한 계획 대비 변동사항·요인 및 관리계획 등에 대한 평가·분석보고서가 국회에 제출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내용은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제출 이후 발생한 경제여건 및 재정여건의 변동을 분석한 내용과 관리계획에 대한 평가·분석 및 종합적인 평가 등을 포함하도록 현행 제7조 3항에 규정하고 있고, 참고자료 154페이지 보시면 그 내용을 일부 볼 수 있습니다.

둘째는 이게 5년 단위 계획이라 매년 변동하는 사항을 반영하는 연동계획 성격의 중기계획이므로 그 집행 결과·실적에 대한 사후 평가의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예정처에서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한 분석·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개정안의 취지에 따라 계획 평가를 강화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이 안건 관련해서는 전문위원도 말씀 주신 대로 현재 국가재정법 제7조 3항에 따라 정부가 전년도에 수립한 국가재정운용계획 대비 변동사항·변동요인 및 관리계획 등에 대한 평가·분석보고서를 매년 첨부서류로 지금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을 파악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전문기관을 지정해서 거기서 하는 게

어떻겠냐 하셨는데 전문위원 말씀 주신 대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또 역시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한 분석·평가를 실시해서 이것들을 참고자료로 배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해도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는 ‘정기회 개최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라’ 그래서 제출 시기를 정기회 개최로 했는데 현행 회계연도 120일 전에 제출하는 그 시기와 사실상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행대로 하는 게 어떻겠냐 해서 신중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서병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병수 위원 이것은 제가 발의를 한 법안인데요, 2020년도~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기획재정부의 개선 방안으로 다섯 가지를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중기계획 변동요인 사후 분석·평가 내실화인데 이렇게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고 또 내실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 구체적인 방안이 있나요?

○기획재정부재정혁신국장 나주범 재정혁신국장입니다.

저희가 국가재정법 7조에 따라서 평가·분석보고서를 21~25 같은 경우에는 30페이지 분량으로 냈습니다.

왜 바뀌었느냐, 바뀐 여건을 보면 대부분 세계경제라든가 대외경제 성장률이 많이 바뀌고 거기에 따라서 수입 여건이 바뀌고 또 위기 과정에서 추경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지출 여건이 바뀌어 가지고……

저희는 20~24가 21~25에서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최대한 상세하게 적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병수 위원 글썄, 여태까지 그렇게 해 왔었는데 그런 것들이 실효성이 없고 지금 내실화되지 않기 때문에 무언가 충실하게 해 보자 하는 의도가 달려 있고요.

실제 매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회에 접수만 되고 이후 위원회 심사라든가 본회의 심의라든지 의결 이런 것들을 거치지 않고 있거든요. 그

러면 참고자료로 제출만 했지 그것을 가지고 실제로 어떤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위한 또는 재정의 건전한 운용을 위한 계획을 하고 있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가 계획 같은 것을 만드니까 계획이나 집행 같은 것은 기획재정부가 하더라도 평가만큼은 외부의 객관적인 어떤 기관에 맡겨 가지고 평가를 받아서 내부적인 평가와 크로스 체크를 해서 조금씩 조금씩 건전하게 변경해 나가는 게 필요한 것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방금 기획재정부 차관계서도 말씀하셨지만 매년 바뀐다 이런 이야기도 국회 보고서에 나와 있기는 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함부로 어떤 목적과 분명한 계획 없이 그때그때 현실에 맞추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지금 국가부채만 하더라도 보면 GDP 대비입니까? 40%로 하다가 불과 1년도 안 돼 가지고 60% 하는 것을 아주 당연한 듯이 주먹구구식으로 해 나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어떤 이유와 목표가 있으면 그렇게…… 환경 같으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상세하게 국민한테 보고하고 평가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기왕에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만든다고 한다면, 그것이 필요 없으면 아예 안 만들든지 아니면 만든다고 하면 제대로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평가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입장에서 강력하게 제3의 연구기관 KDI라든가 조세재정연구원이라든가 이런 데 맡겨서 크로스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을 주장합니다.

○소위원장 류성길 여기에 대해서 차관님 답변 한번 하시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억원 결국 이것은 5년짜리 앞으로 어떻게 될지 중기의 흐름에 대한 분석과 그 전제를 통해서 총량이 어떻게 변할지 이런 것을 하는 건데요. 이미 저희들이 5년짜리를 잡을 때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를, 저희 혼자 하면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미 작성 과정에서 다양한 연구기관들이 같이 참여해서 총량·부문별로 이 부문은 어떻게 어떻게 가는지 그런 것들을 다 이미 반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여기서 사후평가라는 게 단년도에 대한 진짜 집행을 하는 게 아니라 5년짜리 흐름들이 어떻게 갈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주신

말씀대로 평가 이런 것 굉장히 잘해야 되고 그렇게 하지만 이미 사전적으로 달성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국회예산정책처에서도 평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활용도 측면에서 보면 단년도 보시지만 예산 심사할 때 장기 흐름은 어떻게 되는지 보시고, 그것 보고 그리고 아까 서 위원님도 말씀하신 대로 지적도 해 주시고 ‘야, 이것 너무 빨리 가는 것 아니냐, 이게 맞느냐’ 이런 것이기 때문에 활용도도 저희들은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 취지는 저희들이 이 부분 같은 경우 더욱더 많이 활용되고 더 정교하게 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더 내실화는 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길 양경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양경숙 위원 내실화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보세요.

국가재정운용계획이 노무현 정권 초기에 재정개혁의 일환으로 도입이 돼서 지금까지 운용이 되고 있는데 거의 제대로 개혁 방안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이것이 더 발전하고 더 정교화되고 더 예측능력도 높아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국회에서 뭘 지적하기 이전에 정부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한 개혁 방안을 만들어서 보고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해마다 이 부분들이 자주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전이 거의 없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계획뿐만 아니라 운용 전반에 대해서 평가를 포함해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한다, 그래서 이것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는 이러한 노력을 하고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바꾸도록 하겠다라는 정도는 나와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3 기관에 또 평가를 맡기자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있는 제도를 제대로 잘 하겠다라는 계획이 나와 줘야 되는데 그러나 그것도 없이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뭘 했어요? 지금까지 잘한 게 아니잖아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예측 불허한 상황이 발생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감안합니다. 그런데 일반화시켜서 얘기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상황에 따라서 데이터나

전망이나 또 대응 방안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은 충분히 인정하고 감안합니다만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수립되고 집행되고 그것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됐다고 보지 않아요.

그러면 정부가 이 제도를 없애지 않을 거면 적극적인 방안을 내놓고, 오차나 이런 것들이 적도록 하는 방안을 내놓아야지요. ‘지금까지 다 하고 있으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저는 이 문제를 예산심의 때나 국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차관님, 답변해 주시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억원 국가재정운용 중장기계획 수립하는 것은 저희들도 굉장히 큰 프로젝트고요, 그래서 재정 담당하는 국에서는 이게 거의 1년짜리 농사입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해서 계획 세워 갖고 여러 전문기관 작업반도 꾸리고 총량도 만들고 전망도 하고 그다음에 잘 아시는 대로 그 결과물들이 국가재정전략회의라고 그래서 대통령 모시고 각료들이 다 모여서 어떻게 해야 될지 단년도도 하지만 5년짜리로 어떻게 시기를 가져가야 될지 머리 맞대고 토론도 하고요.

그런데 말씀 주신 내용 중에 그런 과정에서 계속해서 조금 더 열심히 하라는 말씀은 저희들이 유념하고요, 그 부분은 더욱더 저희들이 체계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잠깐만요, 차관님.

지금 초점이 안 맞춰지는 것 같아요. 위원님들 말씀은 그 이후의 관련 사항을 분석·평가하자는 말씀인데요, 아까도 차관님 답변이 계획서 작성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완전히 초점을 잘못 맞추고 계세요. 그래서 이 계획이 제출이 됐을 때, 확정이 됐을 때 거기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씀이에요.

담당 국장님, 나주범 국장님.

○기획재정부재정혁신국장 나주범 평가는 저희가 정확하게 팩트에 기반이기 때문에 총량 자체가 지출이라든가 수입 측면에서 왜 그렇게 변화가 있었는지 그것은 정확하게 저희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차가 적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하면 거시경제 모형이라든가 성장률 전망이라든가 또는 총량 측면의 전망 모델을 조금 더 각 관련 실·국과 협조를 해서, 좀 더 개선을 해서 오차가 적도록 최대

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경숙 위원 그래서 오차가 많이 줄었습니까? 더 넓어진 경우도 많잖아요, 분야별로 보면? 그러면 최소화시키려고 노력했어야지요.

○소위원장 류성걸 서병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병수 위원 물론 기재부 입장에서는 기재부 공무원들이 능력이 출중하고 또 온 전력을 다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을 하고 평가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지요. 하시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기가 계획한 것을 자기가 집행하고 자기가 평가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은 객관적인 의미를 잃어버릴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특히 기재부가 주장하는 예비타당성조사 같은 경우 말이에요, 각 부처에다가 맡겨 가지고 하면 되지 왜 기재부가 쥐고 그것을 꼭 관리해야 되는, 그런 논리를 여기다가도 바로 갖다 댈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KDI라든가 아니면 조세재정연구원이라든가 이런 데 맡기는 것과 동시에 국회예산정책처도 이 부분에 대한 평가를 확실하게 가지고 그것을 예산심의 할 때라든가 기재위라든가 아니면 예결위라든가 이런 데서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해 가지고 심의를 하고 의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해야만 제대로 된, 평가 이후에, 평가를 결과로 해서 다음에 더 나은 그런 계획 수립과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나주범 국장님, 여기 개정안을 어떻게 이해를 했습니까?

지금 153쪽의 개정안 첫 번째 동그라미 세 번째 하이픈 거기에 ‘전년도 국가재정운용계획 평가 실시 및 평가보고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국가재정법 제7조제3항제1호에 의한 것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할 때 전년도에 수립한 국가재정운용계획 대비해서 뭐가 바뀌었고 무엇 때문에 바뀌었고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건가에 대한 평가·분석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개정안을 어떻게 이해를 하셨습니까? 그것하고 같은 거예요, 아니면 다른 겁니까?

○기획재정부재정혁신국장 나주범 저는 비슷한 취지로 이해를 했습니다.

전년도 수립한 중기계획 대비해서 올해 수립한 중기계획이 어떤 식으로 변동이 돼 있고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지 그것을 하는데, 다만 저희가 7조에 따라서 정부가 제출하는 것을 서병수 위원님께서 전문기관에 의해서……

○소위원장 류성걸 그러면 지금 현행 제7조제3항제1호의 분석·평가보고서를 자체적으로 할 게 아니라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면 두 개 다 만족하는 것 아닙니까?

○서병수 위원 법안의 취지가 그런 겁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그렇게 하면 만족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이 자체는 그냥 평가·분석 보고서, 지금 현행이 내부에서 하니까 내부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내부에서 평가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 평가·분석 보고서를 외부의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그 결과를 제출하면 될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예산정책처법 제3조제3호에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거시경제동향의 분석 및 전망’, 그 분석이라는 게 분석·평가 같이 포함된다고 봤을 때 예산정책처에서는 그것 제출하고 난 이후에 거기에 대해서 관련되는 거고요. 그렇지요? 국장님, 맞습니까, 제가 이해한 게?

그럴 것 같으면 자꾸 안 된다고 할 게 아니라 지금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너무 마사지를 해서 그냥 매년마다 저것해서 오차 또는 차이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못 믿겠다는 거예요. 1년 지나고 나서 확확 달라지고 하니까 못 믿으니까 관련되는 사항을 하면……

저는 생각이 현행법하고 또 개정안 낸 것하고를 같이 묶어서 외부의 전문기관에다가 의뢰하고 그 결과를 첨부해서 보내 주면 안 돼요, 차관님?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저희들은 저희들도 스스로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국회에 제출하는 이 법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소위원장 류성걸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그다음에 외부기관 같은 경우는 결국 국회에서 의원님들 심사하실 때 도와드리기 위해서 국회예산처가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 3호에 의해서 분석·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평가는 또 거기서 체크 앤 밸런스로 들어가면 목표는, 취지는 달성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양경숙 위원 저는 외부기관 KDI나 조세재정

연구원이 국회예산정책처보다 훨씬 더 탁월한 수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거기서 나온 보고서들도 관점에 따라서 상당히 평가가 다를 수 있고 완벽하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정부 자체 내에서 이 제도를 제대로 운영하겠다는 시스템을 갖추고 평가도 제대로 하고…… 형식적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솔직히 보면? 저도 국가재정운용계획 평가한 것도 보고 재정운용계획서도 보지만 이 제도가 이렇게 오랫동안 운영되고 있는데 아직도 이 수준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계획을 어떻게 변화시켜서 제대로 잘 운영하겠다는 것 그 의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그래서 차관님, 조금 전에 긍정적으로 말씀하셨으니까 이것을 같이 합쳐서 어떻게 할 건지 대안을 함께 제출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국회예산정책처가 지금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 드렸고요.

○소위원장 류성걸 예산정책처는 나중에 제출하고 난 이후에 하는 거고 그전에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제출할 때 평가·분석 보고서를 내야 되니까 그 평가·분석 보고서를 외부의 객관적인 기관에 의뢰를 해서 작성해서 제출하면 어떻겠느냐는 게 제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이해를 하셨다면서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저는 예산정책처가 할 때 결국은 거기도 평가를 하기 때문에 예산정책처도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행정부의 시각과 달리 평가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신 것 중에 양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자체적으로 평가할 때 평가 방법이라든지 이것을 더 체계화하라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더 체계화할 수 있는 내부적인 방안을 준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그래서 그 대안을 한 개만 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서병수 위원 한 가지만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꼭 KDI라든가 외부기관에 맡기는 것이 불필요하하다고 생각을 한다면 예산정책처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제대로 평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기재부가 만들어 놓은 것을 평가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예산정책처가 아예 전년도의 국가재정운용계획 자체를 평가해서 국회에 제대로 보고를 해서 심의의 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고쳤으면 합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서일준 위원님 말씀하시고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일준 위원 차관님, 재정사업 평가라든지 예비타당성 조사라든지 타당성 재조사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KDI라든지 조세재정연구원에서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예.

○서일준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하신 말씀은 ‘국회예산정책처에서 평가를 하고 있으니까 외부기관에서 평가할 필요가 없다’ 이 논리는 저는 너무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기재부에서 자체 평가를 하니까 괜찮다’ 이 논리도 저는 상당히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해서 외부기관에서 평가를 하면 안 되는 이유를 납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까지 설명하시는—국장님도 마찬가지로요—걸 들어 보니까 전혀 수긍할 수가 없어요.

왜 국가재정운용계획만 외부기관에서 평가를 하면 안 된다 또 아니면 사후에 예산정책처에서 하니까 다른 기관에서 할 필요가 없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뭔가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재정혁신국장 나주범 저희가 최대한 상세하게 평가·분석 보고서를 하고 있는데 실상은 만약에 전문연구기관에 의뢰를 했을 경우에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가, 그런 게 실익이 있느냐 여부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부가 왜 중기재정운용계획이 바뀌게 됐고 성장률이라든가 나름대로의 정부 재정 소요에 대한 예측 그런 것들은 사실 정부가 제일 많이 알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해서 전문연구기관이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분야가 뭔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사실은 저희가 여기 오면서 전문연구기관의 의견을 한번 들어 봤거든요. 과연 어느 정도 저희 정부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달라질 수 있는 보고서가 나올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실익이 좀 문제일 것 같습니다.

○서일준 위원 국장님, 이 평가를 외부기관에서 하자고 하는 이 법안 제출 자체가 기재부가 그동안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생긴 겁니다. 지금도 하시는 말씀이 기재부가 최고 많이 아는데 무슨 외부기관에 맡기느냐 지금 이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기재부에서 그동안 말 그대로 필요할 때마다 말이 바뀌고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고 해서 국민들한테 신뢰를 잃으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3의 기관에서 정말 객관적인 평가를 한번 받아 보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김두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두관 위원 수석전문위원한테 좀 물어볼게요.

국회예산처가 생긴 지 얼마 됐습니까? 그것은 한번 알아봐 주시고.

○수석전문위원 정연호 2004년에 생겼습니다.

○김두관 위원 2004년.

지금 예산처장님 산하에 연구위원들이 몇 분이 나 되시지요, 혹시? 하여튼 한번 알아봐 주고.

국회예산처가 충분히 사업평가를 할 수 있으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아마 인력이 많이 보강이 돼도.

그래서 저는 외부평가기관에 의뢰해서 평가를 한번 받아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서병수 의원안도 적극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그래서 그 관련된 사항은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하고 또 기재부의 의견 같이 해서 대안을 한 개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항은 다음에 대안 만들어 오는 것을 보고 다시 최종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연호 의사일정 제52항이 되겠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현행은 재정사업 평가라든지 예타라든지 이런 것을 전문적인 조사·연구기관을 통해서 맡길 수만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고 그 기한에 대해서는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은 KDI 등에서 재정사업 평가, 예타, 타당성 재조사 등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실시할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기한을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정 시 한 차례 그 기한을 연장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한 내 그 보고서를 미제출할 경우

해당 조사 실시 기관에 대한, 재정사업 전문적인 조사·연구기관에 출연금 규정이 있는데 그 출연금을 삭감할 수 있도록 하고, 세 번째는 그 결과보고서 내용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의견은 이러한 개정안은 전문기관 평가·조사 등의 소요기간을 단축하고 평가·조사 등의 지나친 지연과 그에 따른 사업 지연 등을 방지한다는 취지에서 입법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경미한 자구 정비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결과보고서의 내용을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하는 부분은 재정 운용의 공공성 차원에서도 입법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현행 국가재정법 등에 따라 조사 결과가 국회에 보고되고 있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에 공개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161페이지에는 참고자료로 전문기관 출연 현황 그다음에 예타와 타당성 재조사 실시 현황 등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억원 먼저 예타 기한 같은 경우 법률에서 규정하자고 말씀을 주셨는데 국가재정법상 다른 제도 같은 경우도 구체적인 추진이나 구체적인 절차·기준 이런 것들은 저희 시행령이나 지침에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다른 조항과의 정합성 측면에서 저희들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조사가 지연됐을 때 조사기관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출연금을 삭감하는 것을 연계하자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원인을 살펴봤더니 조사기관이 딜레이하기보다는 일단은 여러 가지 쟁점들이 발생하면 신청했던 부처들이 계속 소명을 할 테니 그것을 계속 보자 이런 상황들이 생겨서 어떻게 보면 수요 부처의 상황을 반영해 주면서 조사기간이 좀 장기화되는 측면이 있어서, 거기다 바로 출연금을 삭감시키면 오히려 당초 의도했던 결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다른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서 이것도 그런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결과보고서 이것은 당연히 공개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도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국회에 이미 제출 중에 있고 또 연구전문기관, 기재부, 여러 가지 기관들을 통해서 홈페이지 통해서 즉시 공개하고 있어서 이런 해당 목적은 이미 달성되고 있다고 봐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은 신중검토 이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제가 발의를 했으니까 제가 좀 여쭙겠습니다.

현재 지침상 기한 미준수, 계약서에 따라서 지체상금을 지금 매기고 있나요?

○기획재정부재정관리국장 한경호 재정관리국장 한경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침에는 원칙 9개월이고 1회에 한해서 3개월 연장을 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또 기재부장관과 합의를 할 경우에 또 연장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되면 연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연장될 때는 저희들하고 다 허락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지체상금 대상은 지금, 규정은 지체상금 부과되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그러면 여기 161쪽의 지침상 기한 미준수 이 통계는 뭐를 이야기하는 거지요?

○기획재정부재정관리국장 한경호 그러니까 한번 연장……

○소위원장 류성걸 한 번 연장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출 안 한 거예요, 아니면 당초의 기한이예요?

○기획재정부재정관리국장 한경호 9개월……

○소위원장 류성걸 연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출 안 한 거예요? 정확하게요.

○기획재정부재정관리국장 한경호 계속 연장을 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위원장 류성걸 다시, 정확하게 당초의 기한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번 연장하고 또는 필요할 때 연장하고 난 뒤에 그 기한까지도 준수하지 않은 게 여기의 17, 18, 12건입니까? 아니면 당초의 기한이예요?

○기획재정부타당성심사과장 이지원 여기 참고 2 표에 있는 기간은 당초 저희가 지침에서 규정하는 연장 전의 기간을 중심으로 해서 기한 미준수를 살핀 통계로 보이고요.

○소위원장 류성걸 보이는 게 아니고 이 통계는 기획재정부 자료인데 그렇게 보인다는 말은 하면 안 되고요.

○기획재정부타당성심사과장 이지원 그러니까 그 밑의 각주에 보시면 저희 지침상 기한을 기준으로 해서 그 기한을 넘어가면 미준수로 일단 통계를 잡은 겁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그래요, 그러면 왜 제가 이 발의를 했느냐 하면 기한에 맞추어서 그게 나올 거라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도 도대체 그 결과가 안 나오고 제출이 안 됐다고 하니까 그 기한을 확실하게 준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의 개정안이에요.

그러면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 계약서에 그렇게 쓰여 있었어요? 어디 지침상 그렇게 돼 있습니까? 그냥 계약서라는 게 계약을 딱 하면, 물론 지체상금은 거기에 따라서 특약을 맺어서 며칠 범위 내에서 한 번 연장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때 연장했던 게 또 기한일이잖아요.

○기획재정부재정관리국장 한경호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9개월이 원칙인데 3개월 연장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기재부장관과 합의할 수 있다……

○소위원장 류성걸 그것은 어디에 규정이 돼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재정관리국장 한경호 지침에 돼 있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그래요?

○기획재정부재정관리국장 한경호 예, 지침에 지금 돼 있기 때문에 9개월 플러스 3개월 플러스 합의할 때 또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지침 미준수를 했기 때문에 처벌을 받아야 된다 여기에는 적용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규정은.

○소위원장 류성걸 그러니까 그 지침이라는 게 당연히 몇 월 며칠까지 이렇게 기한이 정해져 있으면 이해관계자들, 특히 지방자치단체라든지 또 관련 기관들이 그 날짜만 기다리고 있는데……

○기획재정부재정관리국장 한경호 제가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161페이지 참고 2를 보시면 예타조사기간이 있습니다. 우측에 실시기간 최소·최대·평균이 있습니다. 18년에는 19.0개월 그리고 19년에 20.1개월, 20년에는 13.9개월로 대폭 줄었습니다.

저희들이 19년 4월에 예타 제도개편을 하면서 KDI뿐만 아니라 조세연도 전문기관이 될 수 있도록 지정을 했고요. 그래서 20년에 대폭 줄었습니다. 줄었다는 정황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기간이 늘어지는 케이스를 보면 B/C가 잘 나와서 부처라든지 지자체가 만족하면 금방 지나갑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게 B/C가 안 나올 때가 문제입니다. B/C가 안 나오면 일단 부처나 지자체에서 첫 번째 하는 게 사업계획을 변경시킵니다, B/C를 올리려고. 그러면 KDI 검토하고 원점으로 다시 되돌아갑니다. 그런데 한 번만 고치지 않고 두 번 세 번씩 고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위원장 류성걸 국장님, 충분히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관련되는 사항을 아까 차관님 말씀대로 법에 상세하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면 이렇게 수정 제안을 하겠습니다. ‘제출기한, 미제출시 조치사항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에서 정한다’ 이렇게 해서,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자치단체라든지 또 관련되는 이해관계인 또 관련되는 기관에서 좀 속된 표현을 하면 목이 빠지도록 기다리고 있는데 계속 딜레이가 돼 가지고 그 결과가 안 나오면, 그런 경우를 지금 여러 건을 제가 보고를 받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수정하면 어떻겠어요?

지금 사실 이게 권리 의무와 관련되는 사항이면 법규사항이기 때문에 지침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데 이게 권리 의무와 관련되는 사항인지 아닌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침에서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기획재정부재정관리국장 한경호 위원님, 국가재정법 제38조제6항에 ‘기재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타조사 대상사업의 선정기준·조사수행기관·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래 가지고 예타에 관한 세부적 내용……

○소위원장 류성걸 그러니까 지침에 권리 의무와 관련되는 사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기한에 관련되는 사항하고 그 기한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의 조치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이야기예요.

○기획재정부재정관리국장 한경호 그러면 위원님께 혹시 제가 대안을 내 드리면 저희들이 기간이 늘어지는 가장 큰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무부처가 사업계획을 자꾸 변경해서 그러는데 지금 R&D……

○소위원장 류성걸 그러니까 그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그것은 내부적인 사항이고.

○기획재정부재정관리국장 한경호 과기부 R&D는 사업계획 변경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칠팔개월 만에 끝내 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빨리 끝내려고 마음 먹으면 사업계획 변경을 일절 허용을 안 해 버리면 빨리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주무부처와 지자체가 불편해집니다. 일단은 사업계획 변경을 안 받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해 주는 건데. 그래서 늘어지기 때문에 일단 기간을 빨리 해서 주무부처나 지자체한테 빨리 결과를 통보하려고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진행하는 절차 세부적 내용을 바꾸는 게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그래서 시행령으로 하는 방안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대안을 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제시해 주십시오.

김두관 위원님.

○김두관 위원 예비타당성조사의 지나친 기한 연장을 방지하고 결과보고서를 국회에 즉시 보고토록 하는 류성걸 의원님 대표발의에 찬성합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다른 위원님.

서병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병수 위원 조금 주제에는 벗어나지만 질문을 할게요.

여기 보면 예비타당성조사가 일반적으로는 한 12개월 정도 걸리고 철도 같은 경우는 한 18개월 기준으로 걸린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한번 연장을 해 줄 수 있다고 했지요? 지침상 한번 연장하고 그다음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을 하면 또 한 번 연장하고 할 수 있다고 했지요? 그 기간은 얼마입니까?

○기획재정부재정관리국장 한경호 한 번 연장은 3개월입니다. 그리고 합의하면 또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병수 위원 뭐 얼마나 연장이 됩니까?

○기획재정부재정관리국장 한경호 그것에 대한 분명한 규정은 지금 없습니다.

○서병수 위원 이런 것들도 보면 제가 볼 때는 이게 투명하지 못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기획재정부재정관리국장 한경호 예, 맞습니다.

○서병수 위원 사실 예비타당성조사의 가장 중요한 것이 편익과 비용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

지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한다 또는 그런 것이 안 나올 때는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자꾸 사업계획을 변경시켜 가지고 그것 때문에 늦어진다고 했는데 아예 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사업계획을 제출한 사람들과 그 예비타당성조사 과업을 하는 사람들이 자주 소통을 하면서 입장을 반영하고 하면 기간 연장이라든가 이런 것 없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보면 예비타당성조사 하기 시작하면 아무도 접근을 못 하게 하거든,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재정관리국장 한경호 저희 실무회의가 있습니다. 실무회의가 있어서 KDI 중심으로 관계 부처, 지자체, 저희 부처도 참가하고 해서 회의를 자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실무직원은 회의가 자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회의가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서병수 위원 그런데 왜 자꾸 연장 3개월 하고 그다음에 더 3개월 해도 못 끝나는 이유가 뭐예요?

○기획재정부재정관리국장 한경호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B/C 분석을 해 가다가 B/C가 안 좋아지게 되면 통과가 힘들어지니까 당연히 주무부처나 지자체에서 사업계획을 고쳐 버립니다.

○서병수 위원 그런 것을 제대로 맺고 끊는 게 KDI라든가 예비타당성조사하는 연구기관에서 해야 될 일이지.

○기획재정부재정관리국장 한경호 그런데 사업계획 변경을 KDI나 우리 측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요청을 한 부처나 지자체가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서병수 위원 그런 것 요청 오더라도 맺고 끊어 버리면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소위원장 류성걸 서일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일준 위원 존경하는 류성걸 의원님이 이 법안 제출한 예타 기간 있잖아요. 이 기간이 정말 일선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원인도 또 있어요.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예타가 안 되니까, B/C가 안 나오니까 사업을 변경해서 연장 연장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는 이 예타 만족시킬 만한 게 거의 없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사업 변경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모

든 것은 수도권만 집중이 되는 현상입니다.

지금 이 법안하고는 약간 다른 내용이지만 예타 제도 전반에 대해서 기재부가 한번 손질을 해야 됩니다. 예타가 지금 최대 긴 것은 보니까 59개월까지 갔는데 이렇게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수도권 집중화, 그다음에 500억 이상은 전부 예타를 다 하는데 지난번에 우리 법안심사할 때 예타를 1000억까지 하자 하다가 어떤 생활형 SOC 이런 문제가 있어서 잠시 보류가 됐는데요.

500억 이상은 전부 예타를 다 하고, 그것 20년 전에 마련된 규정인데 그렇게 하니까 이게 빈익빈 부익부, 그다음에 국가 불균형이 더 심화되는 제도가 예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간 문제도 지금 법안이 발의됐으니까 이 부분도 충분히 짚고 넘어가야 되지만. 차제에 예타 제도 근본에 대해서도 한번 기재부에서 손을 대야 되고, 두 번째는 예타 금액도 최소한 1000억 이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지난번에 예비타당성조사 공청회도 하고 또 연말까지라고 그때 시한이 되어 있는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래서 지난 6월 달 경제재정소위에서 시한을 제가 이야기했는데……

한 국장님, 그때 언제였지요? 10월까지였지요? 10월까지였습니까, 연말까지였습니까?

○기획재정부재정관리국장 한경호 10월 정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그런데, 준비 다 됐지요?

그래서 이번에 예타 관련된 사항은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고 최종 의결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관련되는 사항을 다음 회의 시작할 때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비타당성조사 조금 전에 서일준 위원님 말씀하시고 그때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의견 일치를 봤던 부분이 SOC를 먼저 1000억으로 하고 대상 관련된 사항들까지 포함해서 이번에 의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재정관리국장 한경호 위원님, 혹시 제가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소위원장 류성걸 예.

○기획재정부재정관리국장 한경호 아까 서일준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19년 4월에 제도개편을 하고 그 제도개편 결과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4월에 국도·국지도 일괄 예타를 했었는데 옛날에 B/C가 1.0 미만이면 지방은 통과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B/C가 0.2 정도 되는 게 경북에 하나 통과를 했고요. B/C 0.6 미만인데 통과한 사업이 통과한 사업 중의 24%입니다. 4분의 1이 됐습니다, 0.6 미만이. 0.8로 끊어 보니까 60%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국장님, 알겠어요.

그것은 B/C 관련되는 사항이고 최종적인 결정은 AHP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정책적 고려 또는 정책적 의지, 다른 사항들을 포함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

○기획재정부재정관리국장 한경호 그래서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전문가 회의도 하고 내부 검토도 하고 했었는데요, 전문가들이 한결같이 지금 제도개편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지방을, 지역균형발전을 상당히 고려할 수 있는 방향으로 되었다……

○소위원장 류성걸 그 내용도 포함해서 제출해 주세요. 이미 공청회도 했고 또 위원님들 의견이 상당히 모여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관련해서 아까 제가 제안했던 것하고 또 6월 회의 때 10월 말까지 제출하도록 그때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출 안 해서 다음번 회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 예타 관련된 사항은 위원님들 최종 협의를 거쳐서 의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운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운천 위원님 말씀하시고 양경숙 위원님 말씀하시고.

○정운천 위원 제가 죽 들어 보니까요, 항상 제가 전번에도 얘기했지만 효율, 결과를 만들어 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금 간사님 말씀대로 공청회까지도 하고 또 예비타당성에 대한 돈 500억을 1000억으로 하고 하는 여러 가지가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답이 나왔으면 오늘은 정부 의견이 구체적인 마무리 검토의견으로 나와야 되는데 뭐 여기 보면 꼭 신중 검토, 뭔가 프로세스가 일이 되게끔 하는 프로세스가 아니고요 계속 시간을……

간사님, 얼마나 끝났습니까? 이것 시작한 지가 꽤 오래됐지요?

○소위원장 류성걸 예, 금년에 공청회도 하고 여러 전문가 의견도 듣고 외부 의견도 듣고 그렇게 했습니다.

○정운천 위원 그래서 이런 프로세스를 정부 측

에서 마무리할 때는 좀 마무리하게 구체적으로 답을 가져와야지 또 오늘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게…… 좀 그러한 것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서 효율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차관님이시죠?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억원** 예.

○**정운천 위원** 아까 간사님 말씀대로 다음에 할 때는 이것 완전 딱 마무리해서 딱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마무리합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억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 아까 서병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명확하게 하고 엄격하게 해서, 신뢰성을 확실히 높이려면 기한을 엄격하게 하고 그래서 타이트하게 하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그런데 또 현실적으로 사업부서들 같은 경우 사업 변경이고 또 아까 서일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방은 이게 여러 가지로 제도에 대한 부분도 있고 상당히 안타까워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제도가 이렇게 됐는데, 참 고민이 많은 부분이지는 합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양경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양경숙 위원** 예타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많이 지적이 됐었고 그런데 정부가 종합적인 대책을 국회에다가 잘 보고를 하고 또 문제점도 지적받고 보완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충분하지 않았더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과정들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B/C 분석 같은 경우에 인구가 많은 지역과 아주 적은 지역 또 수도권과 지방과의 차이가 클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어떤 기준을 그냥 일방적으로 똑같이 평준화시켜서 정해 놓고 되냐 안 되냐 하는 것들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준을 다양하게 만들어서 설득력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방 같은 경우에 이 기준에 맞출 수가 거의 없다는 게, 서일준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 그렇다면 정부가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하든지 해서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없다는 거지요.

계속 변경시켜라 변경시켜라 그리고 또 올려 주고 된다, 처음에는 안 된다고 했다가 몇 번 지나면 된다 이렇게 바꾸고 하는 것보다는 정확한 기

준을 만들어서 제시하세요. 잘 아실 것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저는 출연금 삭감 이런 부분은 의도는 이해할 수 있지만 예산심사할 때 삭감하면 되는데 그것을 법으로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것은 또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비타당성조사 기한도 정확하게 정하고 어떤 지침을 통해서든, 법까지 만들어야 되나 저는 이런 의문점은 있습니다만 준수를 어떻게 그렇게 일괄적으로 똑같이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합니까? 그것을 법으로 정해 가지고 하자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예타 제도 전반에 대한 현실적인 개혁 방안이 더 우선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소위원장 류성걸**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료 제출해 주시고 또 관련되는 사항은 투명성 제고라는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다음 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연호**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68페이지 되겠습니다.

예산안 등 국회 제출 시한을 2013년 이전으로 환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 규정은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국가재정 운용계획 등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로 제출 시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개정안은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로 환원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좌측 하단에 보시면 2013년 법 개정에서 정부 예산안 편성 일정 조정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입법 필요성 차원에서 첫째로 정부의 편성 일정이 추가로 확보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면밀한 예산안 편성 검토가 가능하다는 당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둘째, 지금 헌법 제54조에서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로 명시하고 있는 예산안 제출 시한과 그 기한을 맞출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고려할 사항으로 첫째는 국회 심사 기간을 축소하게 되는 결과가 되는데 국회 예산안심의 기간의 적정성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해외 주요국의 경우에 심사 기간을 참고자료 2에서 제시를 하였는데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둘째는 이 법 개정할 때 2013년 이전에도 이런 논의가 있었는데 법률로 예산안 제출기한을 앞당기는 것은 헌법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도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셋째는 국정감사와 관련된 사항인데요.

국정감사를 관련 법에서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금 관례대로 10월에 국정감사를 실시할 경우에도 9월 초에 그다음 연도 예산안이 제출된다면 국정감사에 활용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의견입니다.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개정안대로 이렇게 제출 시한을 앞당길 경우 좌측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산안 편성지침 통보라든지 예산요구서 제출기한도 과거와 같이 늦출 필요는 없는지 이것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169페이지 이하는 참고자료로 해외 주요국의 예산안 심사기간과 그다음에 170페이지 이하에서 예산안 국회 심의 일자, 국정감사 실시 일자 등을 참고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이미 이 사안은 국회에서 13년에 논의해서 그전까지 해 왔던 제출기한을 현행처럼 바꾸는 것으로 논의하셔서 결정을 하신 거고요. 그 당시에에도 제일 중요한 게 포인트가 뭐냐 하면 헌법에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이런 건데 위헌 부분에 있어서 헌법보다 일찍 내는 게 과연 위헌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헌법보다 일찍 내는 게 위배가 아니다 그래서 그렇게 맞춰서 정리가 됐었던 부분이 있고요.

또 실제로 운영 과정에서 보면 정부도 준비해야 되고 또 국회도 12월 초까지 하려면 국회에서도 심사기간 확보 이런 측면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그런데 여기에 '정부 의견 이견 없음' 해 놓은 것은 뭐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지금……

○소위원장 류성걸 잠깐만요, 제가 발의를 했기 때문에 저한테 먼저 발언권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차관님 말씀은 현행대로 유지하겠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168쪽 정부 의견 이

견 없음은 무슨 뜻이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정부 입장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행 유지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그래요? 그러면 이견 없음에 대해서 언제 제출했나요?

수석전문위원님, 언제 받으신 의견이지요?

○수석전문위원 정연호 저희들이 자료 받기로는 11월 6일 자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그러면 11월 6일부터 오늘이 11월 23일인데 한 2주, 3주가 안 된 사이에 의견이 바뀌었나요?

○수석전문위원 정연호 죄송합니다. 그 11월 6일이 작년 2020년 11월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그러면 1년 정도 됐을 때 의견이 바뀌었나요?

○기획재정부예산총괄과장 박창환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검토를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그래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제가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헌법 제54조에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 현행은 제19대 국회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고 저는 그때 반대를 했습니다. 왜? 이것이 행태가 바뀌어지지 않는데 일정한 바꾼다고 해서 심사가 심도 있게 충분히 되겠느냐 하는……

그 뒤에 자료 170쪽을 보시면 대통령 시정연설이라는 게 그때가 바로 예산이 시작하는 시점에요. 시정연설이라는 게 뭐니까? 예산에 관련되는 시정연설이에요. 그러면 시정연설 날짜 한번 보십시오. 그전의 날짜나 그 날짜나 거의 비슷해요. 결국은 30일을 당긴다 하더라도 행정부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또 국회에서도 실제로 여기 뒤에 예결위 심사 개시를 보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뭘 그렇게 해요? 120일 전까지가 아니라 한 150일 전까지, 여기 보니까 미국의 경우에 150일 또 독일도 150일인데 더 당겨 하지요.

이것이 행정부에서의 예산안 편성 관련된 사항이 좀 더 자료도 모으고 또 관련되는 사항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것이고.

두 번째는 이렇게 법이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의 예산심사 기일은 거의 바뀐 것이 없다, 시정연설과 예산심사 일정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30일이라는 것은 말로만 30일이고 실제로 현 정부에서는 예산안을 준비하는 시간이 30일

모자란다 이런 취지예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영 위원님.

○정일영 위원 정부 측이 현행대로 의견을 말씀하셨잖아요. 그 의견 잘 말씀하신 것 같아요. 현재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인데 90일 전으로 하면 그만큼 정부 측이 30일 늦게 제출해도 된다는 거잖아요.

저는 현재 우리 국회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제도가 잘못된 게 아니고, 제도는 바람직하게 잘 만들어 놔는데 국회가 정부에서 제출된 예산안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검토하고 분석해서 예산을 심의해야 되는데 제가 보면 급하게, 그냥 뭐 예결위도 그렇고, 예결위 활동도 해 보고 상임위 활동도 해 보지만 정부 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할 만한 시간도 없고 자료도 없고 그냥 시간 보내다가 이렇게 급하게들 처리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국회가 다시 시스템을 바꿔서 정부 예산을 제대로 심의할 수 있게 헌법에서 주어진 권한, 국민이 준 권한, 책임 그것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국회가 바꾸어야지 잘못된 것을 가지고 그 잘못된 시스템에 맞추는 개정보다는 미리 제출되어 가지고 국회에서 심도 있게 분석하는 게 좋다고 보고요.

저는 정부 측에서 예산안 만드는 데 시간이 부족한 것은 아닌 것으로 봐요. 예산안 끝나면 통상적으로 보면 1, 2월 달은 여러 가지 준비하느라고 보내고 3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각 부처하고 회의하면서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5, 6월 달에 대통령 모시고 무슨 재정회의도 하고 즉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하는데 그 정도 시간이면 정부 측에서는 시간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문제는 국회로 제출된 다음에 국회에서 예산 심의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 국회 문제겠지만 국회에서 그런 시스템이 예산정책처 그런 데서 더욱 하고 우리 상임위하고도 여러 가지 정보와 자료 교환들을 좀 하고 해야지 그게 저는 국민으로부터 또 헌법에서 주어진 권한을 국회와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일을 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현행 유지에 찬성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실무적인 답변을 한번 하시지요.

○정일영 위원 답변은 굳이 안 해도 돼요.

○소위원장 류성걸 실무적으로 관련되는, 일정에 관련해서 답변 한 말씀 해 주세요.

○정일영 위원 일정?

○소위원장 류성걸 일정이라든지 좀 전에 말씀하신 내용, 이 법안 내용에 대해서 실무적인 의견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누군지 이야기를 하시고요.

○기획재정부예산총괄과장 박창환 예산총괄과장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과거에 90일 전 제출하던 때도 근무를 했었고 지금 120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3년에 이 논의가 있었던 이유 중의 하나가 국회에서 12월 30일까지 늘 통과되는 잘못된 관례를 선진화법에 의해서 조금 당기면서 국회도 심도 깊은 심사 준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행정부에서 일하기에는 조금 압축적으로 해야 되지만 9월 2일까지 제출하도록 개정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년 전에 의견을 낼 때 이견 없음은 국회에서 이것이 선진화법과도 맞물려 있고 또 국회 심사에 충분한 심사기간 확보성과 함께 행정부 내의 업무 과중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것 바꾸는 것은 조금 국회에서 논의해 주신다면 그 의견을 따르겠다라는 얘기를 제출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번에 다시 검토하면서 여전히 그 의견을 따라야 되겠지만 양쪽 측면을 다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저희 차관님께서 주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다른 위원님들 말씀……

양경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양경숙 위원 2013년에 90일 전까지 제출하던 예산안을 120일 전까지로 바꾼 이유가 분명하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설명하신 대로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되면서 12월 초까지 예산안 의결을 의무적으로 마쳐야 되는데 90일 전에 제출하게 되면, 국회의원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국정감사 끝나고 보기 시작하는 의원들이 현실적으로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국회 전문기관이 분석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예산정책처의 분석 자료를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 참고를 많이 해서 발언도 하고 심사를 하게 되는데 90일 전에 제출해서는 국회 전문기관이 어떻게 이것을 제대로 분석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현행대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이 안건은 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제출했던 이 안건의 취지는 행정부의

예산안 마련 때 과거와 같은 그런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미 행정부에서 신중검토 또는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계속 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연호 자료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표에 도로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를 설치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법안은 좌측에서 보는 것처럼 행안위에 계류 중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개정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 개정 내용에 따른 특별회계를 보면 세입은 지방경찰청장이 부과·징수하는 과태료라든지 그 다음에 교통범칙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출은 175페이지에 보시는 바와 같이 도로구간 등 개선에 필요한 경비라든지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개선에 필요한 경비를 사용하는 데 쓰이는 용도입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당연히 특별회계를 설치하면 전제로서 도로의 관리 개선과 국민의 교통안전 제고에 기여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국가재정법 제14조에 따른 특별회계 설치 시 정부의 심사기준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원칙에 따라 살펴보면 현행에도 국토부·행안부·경찰청에서 각각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 등 세 가지 사업을 통해 이런 유사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현행 예산지원체계보다 특별회계 설치가 더 효과적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175페이지 표 아래쪽에 특별회계의 재원이 과태료·범칙금으로 특정한 세입이라는 점에서 요건이 일단 충족은 되는데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 처리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낮은 교통안전 수준 제고를 위한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예산 투입 필요성과 특별회계 설치로 인한 재정의 복잡성 및 유사·중복 사업의 발생 가능성 등을 비교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이것은 사실 모법인 특별회계 설치법이 행안위에서 통과가 되어야

되는데요, 행안위에서 아직 논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필요성 측면에서도 아까 전문위원 말씀 주신 대로 이미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 지역교통안전 환경개선, 교통안전 해서 다 나름대로 특별회계랑 일반회계를 통해서 이 사업들이 다 충족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특별회계를 신설해야 될 필요성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수용곤란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일영 위원 그런데 이것은 설치가 필요 없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요.

한 가지 간단히 확인해 봅시다.

현재 교통범칙금하고 과태료가 어디로 들어가고 있지요, 어느 회계로?

○기획재정부법사예산과장 박호성 일반회계 수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일영 위원 지금 일반회계로 다 들어가고 있어요?

○기획재정부법사예산과장 박호성 예.

○정일영 위원 전에 무슨 상업시설특별회계인가 뭔가 그것은 어떻게 됐어요?

○기획재정부법사예산과장 박호성 그 기금으로 들어가는데요, 그것은 일반회계 전입을 받아서 그중에 산정하는 적산 기초가 됩니다. 벌금 수입의 한 6% 수준을 범죄피해자 구조기금으로 전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가는 것은 아니고요.

○정일영 위원 전에 보면 이런 것을 건어 가지고 무슨 경찰서, 법원, 검찰 이런 데 건물 짓는데도 쓰지 않았었나요?

○기획재정부법사예산과장 박호성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일영 위원 전혀 쓰는 것 없고?

○기획재정부법사예산과장 박호성 예, 건물 짓는 것은 국유재산관리기금에서……

○정일영 위원 거기에서 다 나가고 있지요?

○기획재정부법사예산과장 박호성 예.

○소위원장 류성걸 그것을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요. 과거에 자동차 특별회계가, 자특이 있었습니다. 지금 정일영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자특에 관련된……

○정일영 위원 위원장님,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으니까 얘기 끝난 다음에…… 제가 질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잘 확인해 보고, 하여튼 교통법칙금이나 과태료가 일반회계로 들어가서 일반도로라든지에 쓰이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이게 그 이외에 너무 행정 편의적으로 경찰이나 관련되는 사법기관 이런 데 건축물이나 이쪽으로 일반회계에서 무슨 기금식으로 넘어가서 쿼터 정해서 이렇게 쓰이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현재 도로관리 개선 이런 것 등등, 신호등 이런 것도 다 지금 일반회계에서 나가고 있지요? 도로사업 특별회계에서도 일부 나가나요?

○기획재정부법사예산과장 박호성 그것은 좀 나뉘어져 있는데요. 지자체에서 설치하고 있는 것들은 운영비는 지자체에서 하고 저희가 국고에서 설치비용을 주고 있고요. 또 국도에 있는 신호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일반회계로 하고 있습니다.

○정일영 위원 일반회계로 나가고, 나누어져 있어요?

○기획재정부법사예산과장 박호성 그렇습니다.

○정일영 위원 어쨌든 이런 범칙금·과태료가 교통안전에 재투자되는 것은 좋은데 특별회계를 만들어 가지고 따로 해서 다른 특별회계하고 또 중첩이 되는 것은, 저는 재정원칙상 특별회계를 많이 만드는 것은 좋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 의견도 반대 쪽인 것 같으니까 저는 이것은 특별회계는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사항은 하지 않는 것으로 일단 하고 계속해서 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연호 자료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제도를 연계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은 예산의 원칙으로 여러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개정 대비표 맨 마지막 아래쪽에 보시면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도

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 효과를 평가할 때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포함하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여기에 대한 검토의견은, 현행 성별영향평가법 제9조 2항에서 유사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재정법에도 이런 미진한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억원 이것은 이미 시행이 되어 오고 있는 내용을 구체화하고 강조하고 명확화하는 부분이 되어서 정부는 수용 의견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숙 위원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잠정 합의하겠습니다.

다음 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연호 자료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예산의 재배정 관련 규정 신설 및 한국재정정보원의 재배정에 관한 대행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 국가재정법에는 예산의 배정에 관한 규정만 있고 예산의 재배정에 관해서는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재배정에 관한 사항을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업무를 대행하다 보니까 법적 미비로 좀 문제가 제기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의 재배정에 관한 총괄적인 규정, ‘중앙관서의 장은 지출원인행위 시 재무관별로 세출예산재배정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세출예산 재배정을 실시한다’라는 등의 내용을 대강의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고 그다음에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이와 관련 업무를 대행 가능하도록 근거를 명시하는 내용으로 검토의견은 재배정이 실무적인 업무라 재배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억원 명시적으로 재정정보원의 예산 재배정 대행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거고요, 그 필요성도 인정이 되기 때문에

정부는 수용 의견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총괄과장님, 예산 재배정이라는 단어가 시행령에 나오는데 재배정이라는 게 법률 용어인가요?

○기획재정부예산총괄과장 박창환 법상 국가재정법에는 없고 시행령에만 현재 언급되어 있는 용어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그래서 여기에 ‘예산 재배정이라 함은’ 해서 정리를 해 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예요.

○기획재정부예산총괄과장 박창환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이게 갑자기 뜬금없이 시행령에 나와 있는 것을 올리면서 재배정이라는…… 배정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그걸 같이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예산총괄과장 박창환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재정부예산총괄과장 박창환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그래서 이 관련되는 사항은 용어에 관련되는 사항을 포함해서 잠정 합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086)

5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7025)

59. 재정건전화법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096)

6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229)

6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265)

62. 재정건전화법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270)

6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희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994)

6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44)

(11시31분)

○소위원장 류성걸 다음은 의사일정 제57항부터

제64항까지 이상 6건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건의 재정건전화법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연호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 보시면 개략적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내용이 좀 많습니다.

먼저 일차적으로 법안 제·개정 필요성과 재정준칙의 사항을 보고를 드리고 나머지 사항들은 몇 가지씩 끊어서 순차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략적인 내용은 제정안의 목적이란지 재정건전화 책무 그다음에 재정전략위원회, 재정준칙 법제화 등이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계잉여금 활용 및 채무상환 확대, 재정수지통제 계정, 그다음 자료 2페이지 보시면 국세감면율 한도 준수 의무화, 그다음에 페이고 원칙을 확대하는 내용 그다음에 공공부문과 사회보험 재정건전성 관리 등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먼저 가 사항과 마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정안·개정안의 입법 취지와 입법 필요성입니다.

두 의원안은 법률안을 제정하는 것이고 의원안 2건과 정부안은 현행 국가재정법의 개정을 통해 재정건전화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및 사회보험을 포괄한 재정건전화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재정준칙을 법률에 규정하는 내용은 제정안과 개정안이 유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의견은 법률을 새로 제정하는 것이 좋은지 현행 국가재정법을 개정하는 방식이 적절한지가 먼저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법률 제정이 필요한 측면은 지방정부, 공공기관의 재정건전화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라는 점이고, 그다음에 기존 법률 개정이 필요한 측면은 제정안의 재정건전화에 대한 내용이 현행 국가재정법에 규율되어 있는 내용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그러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국가부채 전망 및 미래 재정 위험을 고려할 때 이런 재정준칙을 포함한 법 제·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먼저 포괄적인 재정건전화 정책이 법 제·개정으로 추진이 가능한 측면이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법제화된 재정준칙의 도입을 통해 재정건전화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보시면, 그동안 정부가 중앙정부 채무에 대해서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한다는 재정규율을 제시해 왔는데 이를 준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일부 발생했습니다.

다만 이 법률 제·개정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으로는 법률에 재정준칙을 명시하는 것이 경제여건 등 변화하는 상황에 따른 국가재정의 유연한 대처를 어렵게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측면이 중요하게 고려돼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제정·개정안은 재정수입의 증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반면에 강력한 지출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국민 복지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지출이 제약될 가능성도 검토돼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대 국회에서도 이런 제정안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찬성·반대 입장은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은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자료 15페이지까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좀 많은데요.

구체적으로 재정준칙과 관련해서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의원안은 국가채무비율을 일단 45%로 유지하고 관리재정수지를 2~3% 이하로 유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정부안은 국가채무비율이라든지 통합재정수지가 되겠습니다. 통합재정 비율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재정준칙 준수 예외 사유는, 재정준칙을 준수 예외를 두고 있는데 그 요건은 지금 현행 추정 편성 요건과 동일하되 정부안은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서 세계 금융위기라든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 이런 요건들을 예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고용상의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 등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면에 윤희숙 의원안은 재정수지의 관리를 다른 방식으로 하는데요. 그 내용은 예산안 편성 시 재정수입과 재정지출이 원칙적으로 균형을 이루도록 관리하되 신규 국가채무가 GDP 대비 0.5% 이하면 균형으로 간주하는 내용

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채무의 관리도 추정 편성 사유가 2년 이상 지속될 경우 GDP 대비 0.5%를 초과하는 국가채무를 통해 재정수입 충당을 허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국가채무의 범위에 대해서 금전채무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준칙 위반 시 조치 방안은 의원안의 경우 주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예산안 편성 시 45%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내의 기간 동안 감축계획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 결산 시 45%를 초과하는 경우 세계잉여금을 국가채무를 상환하는 데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부안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첫 번째, 재정준칙 적용 예외 사유 소멸 후에 편성하는 예산안의 회계연도부터 4회계연도 이내의 기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가한 국가채무를 재정준칙에 반영하고 그다음에 재정준칙 적용 예외 사유 소멸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내의 기간 동안 재정건전화 대책을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재정준칙 적정성 재검토에 있어서 두 의원안은 5년마다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추경호 의원안은 사회보장제도 장기재정 추계와 장기재정 전망을 실시할 때 적정성 검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부는 국가채무 재정수지관리기준의 적정성 여부를 5년마다 다시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는 지금까지 설명드린 개정안의 내용을 요약한 내용이고, 내용이 좀 많습시다라는 계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체토론과 검토의견요지를 주제별로.

재정준칙의 법률 명시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측면은 국가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대내외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고 재정준칙을 도입하고 있는 많은 국가가 대부분 성문화된 법률 형태로 재정준칙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고려할 사항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처럼 경제 여건에 따라 탄력적인 재정 정책을 추진하는 데 약간 제약이 있지 않나 이런 의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약으로 다시 재정수입을 감소시켜 재정건전성 악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재정준칙의 수준이 45%, 2~3% 정도로 되어 있는데요. 재정준칙을 설정할 필요성을 보면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25년의 국가채무비율이 58.8%,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4.6%로 의원안의 재정준칙 수준이 엄격하다고 보입니다, 현행 상황을 감안하면. 그래서 법률안의 제정 또는 개정과 동시에 상당한 수준의 긴축 재정을 운영하여야 그 기준을 달성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윤희숙 의원안은 매년 일정 수준 적자가 발생하는 재정 현상과 달리 재정 균형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다른 의원안보다 더 엄격한 수준인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정부안은 통합재정수지로서 관리재정수지보다 낮은 적자 비율이 나타나므로 3%는 지나치게 완화된 기준이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상당수의 국가가 국가채무비율 기준을 60% 수준으로, 재정수지적자 비율은 3% 이내의 수준으로 재정준칙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참고자료 1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19페이지입니다.

정부안의 재정준칙 산식을 시행령에 위임했지만 정부가 밝힌 산식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리라 보고, 여기에 대한 검토의견은 국가채무비율이라든지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기준점보다 높아지는 경우 자연스럽게 재정건전화를 위한 긴축재정이 가능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채무비율이 70% 수준인 경우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 상한은 상대적으로 낮아져야 되기 때문에 2.57%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산식이 국가채무비율이 60%보다 낮아지는 경우에는 오히려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 기준이 완화되어 재정의 확장적 운용의 근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통합재정수지 흑자 발생 시에는 국가채무비율이 무한정 허용된다는 산식의 특성상 그러한 결과가 도출되는데 통합재정수지의 경우 2011년부터 적자인 해는 3개년 정도인 것도 고려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근거로는 통합재정수지가 흑자인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결과값이 무조건 음수가 도출되어 국가채무비율에 관계없이 기준을 충족하게 되는 경우가 되므로 국가채무비율이 무한정 허용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통합재정수지를 표로써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보고를 드리면, 재정수지 기준을 통합재정수지를 할 건지 그다음에 관리재정수지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통합재정수지 적용 필요성은 이것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것이므로 국제적 기준과의 정합성을 꾀할 수 있고 반면에 관리재정수지 적용 필요성은 관리재정수지가 당해 연도의 재정건전성을 보다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장기적으로 보면 미래 일정 시점, 그러니까 사회보장성기금수지가 적자로 선회되는 시점에서는 통합재정수지가 보다 정확한 지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정준칙 적용의 예외사유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추정 요건과 똑같은데 이것이 추정 요건으로 할 경우 최근 10회계연도 중에 7개 연도에 걸쳐 가지고 추정이 편성되었으므로 재정준칙이 허물어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부안도 그렇게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고.

다음 2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재정준칙 위반 시 조치 방안으로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또 중요한 내용이 작성 시점이 되겠습니다.

의원안은 재정준칙을 위반한 때부터고 정부안은 재정준칙 적용 예외사유가 소멸한 다음 회계연도부터입니다.

그다음에 적용 대상 기간은 5회계연도 기간으로 비슷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가채무 상환에 있어서 세계잉여금으로 상환하는데 의원안에는 규정이 돼 있지만 정부안은 미규정이 돼 있고, 그다음에 정부안은 세계잉여금 중 국가채무 상환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증가한 국가채무를 재정준칙에 반영하는 데 있어서 정부는 채무비율 증가율 중 1차 연도에 25%, 2차 연도에 50%, 3차 연도에 75%, 그다음에 마지막 연도에 100%로 단계적으로 반

영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조치 방안에 대한 검토의견은 정부안은 재정준칙 적용 예외사유가 소멸한 이후에 재정건전화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재정준칙 적용 예외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은 재정준칙을 준수하지 않게 될 것이므로 재정건전화 대책을 수립할 실익이 크지 않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재정준칙 적용의 예외사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기간 동안 재정준칙을 준수하지 아니할 수 있을 뿐이며, 정부는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하에서도 재정건전화를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감안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세계잉여금의 국가채무 우선 상환과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세수 여건 변화에 따라 국가채무비율의 증감이 자연적으로 조절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으나 지방교부세(금)을 정산하지 않고 이에 우선하여 국가채무를 상환하더라도 지출을 늦추는 효과만 발생시킨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증가한 국가채무를 재정준칙에 반영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재정준칙 적용의 예외사유가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경제에 발생할 충격이 단번에 해소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재정준칙 적용 예외사유가 종료된 첫 번째 회계연도부터 강력한 긴축재정을 실시하는 것은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정부안과 같이 증가된 채무비율을 점진적으로 반영할 필요성은 인정되는 측면이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준칙 적정성 검토인데요.

검토 시점과 관련해서는 요건이 정부안과 의원안 두 건의 경우 언제 시행할지 문구상으로는 불확실한 측면이 있는데 추경호 의원안과 같이 ‘장기재정전망 등을 실시한 때’ 등으로 좀 분명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준칙 검토 대상 관련해서는 의원안은 국가채무비율만을 재검토하도록 하고 있는데 정부안과 같이 재정수지관리 기준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고.

마지막으로 검토 결과는 국회에 제출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 이하는 참고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시지요. 지금 점심 시간이 다 되어가는데 이 내용이 굉장히 많고 하기 때문에 점심 식사를 하고 논의를 하는 것이 저희가 더 효율적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회를 했다가 이따 2시에 다시 해서 심사를 계속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괜찮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정일영 위원 좋고요. 근데 혹시 점심 시간 때 이것이 내용도 굉장히 많고 복잡하고 정부안도 있고 제정안도 있고 개정안 이것이 막 뒤죽박죽, 그리고 다 이렇게 연결돼 있는 조문들인 것 같은데 좀 정리돼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정부나 아니면 전문위원님들이 정리된 자료 있으면 이따가 한번 좀 주세요, 이렇게 비교해 가지고 클리어하게 볼 수 있게.

○소위원장 류성걸 자료가 있으면 이따가 회의 시작하면서 같이 배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회)

○소위원장 류성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하신 사항에 대해서 정부 측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이 간략한 자료를 설명을 드릴까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소위원장 류성걸 이것 포함해서 제정안도 있고 또 개정안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같이 모아놨거든요. 그래서 아까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순서대로 해도 좋고, 하여튼 쟁점별로는 전부 다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재정준칙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게 먼저 법률을 제정할 거냐 아니면 현행 있는 국가재정법을 개정할 거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류성걸·송언석 의원님안은 재정건전화법안을 새로이 제정하는 거고요, 정부안을 포함해서 다른 법안들은 현행 있는 국가재정법을 개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단 제가 먼저 설명하고 의견은 순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보실 게 준칙을 규정하는 방

식이 정부는 법률에 근거만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다른 안들은 법률 자체에서 규정을 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켜야 되는 재정준칙의 내용, 유형을 보면 류성걸·송언석 의원안과 추경호 의원안은 국가채무비율로 45% 이하 유지, 그래서 채무비율을 아예 특정을 하나 딱 확실히 하셨고요. 정부 같은 경우는 채무와 통합수지 이것을 중복해서 같이 곱셈 형식으로 해서 지키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윤희숙 의원안 같은 경우는 아예 균형을 맞춰야 된다 그래서 굉장히 수입과 지출이 균형이 되는 그런 식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류성걸·송언석 의원안과 추경호 의원안은 국가채무비율 이외에 재정수지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재정수지 같은 경우는 관리재정수지로 적자 2% 이하, 3% 이하 이렇게 해서 이 내용들을 지켜야 된다 해서 내용을 각각 따로따로 하는 게 있고 정부안같이 통합해서 하는 그런 방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준칙에 혹시라도 예외규정은 어떻게 둘 거냐 해서 예외들은 다 두셨는데요 예외 두신 게 앞부분의 두 의원 법안 같은 경우는 전쟁이나 대규모 재난으로 인한 피해 그다음에 경기침체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경우에는 추경편성 요건과 동일하게 잠시 준칙 적용의 예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되었고요.

정부안은 그 부분에다가 최근의 코로나 상황 같은 것을 반영해서 세계 금융위기, 코로나19에 따른 위기 등 중대한 변화 이런 부분을 지정했습니다.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는 이런 사유보다도 추경 사유가 2년 이상 지속할 경우 국가채무를 통해 재정수입 충당 허용 이런 식의 방식으로 예외를 인정했습니다.

준칙을 위반할 때 어떠한 조치를 해야 되느냐, 정부가 뭘 해야 되느냐, 그런 것 같은 경우 앞의 두 법안 같은 경우는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내의 기간 동안 감축계획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포함시켜야 된다 그리고 세계잉여금이 발생되는 것은 바로 국가채무 상환에 전액 상환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부 같은 경우는 예외기간 중에 증가한 채무는 바로 100% 준칙에 반영하는 게 아니라 충격이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부문별로 나눠서 준칙에 반영한다 그리고 예외사유가 소멸된 다음의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동안 건전화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세계잉여금이 발생했을 때 현재 국가채무상환 비율이 30%인데 정부는 50%로 20%p 상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윤희숙 의원안 같은 경우는 위반했을 때 국가채무상환계획서 제출 및 국가채무 의무상환으로 굉장히 강하게 의무를 부여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준칙의 내용을 그때그때 어떻게 다시 변동성을 허용할 거냐에 있어서 적정성 검토를 첫 번째는 5년마다 검토하는 것, 두 번째는 사회보장제도 장기재정추계와 장기재정전망을 실시한 때 검토하는 것, 정부는 5년마다 검토하는 것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용 시기, 이것은 법 통과하고 시행 이후에 첫 번째 예산안 편성 시부터 하고 정부는 2025년 예산안 편성 시부터 하고 윤희숙 의원안 같은 경우에 법 시행 후 예산안 편성 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 의견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준칙 규정 방식 같은 경우 지금 재정건전화법안이라고 새롭게 제정하는 것은 내용을 일부 담는 것도 있지만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가 재정규율의 대상을 현재 국가 말고 지자체와 공공기관도 포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지자체는 지자체의 자율성이 있고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공운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재정건전화법을 새로 제정하기보다는 현행 국가재정법 개정안에서 이런 내용들을 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은 현행법 개정안 이쪽에 의견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정준칙의 방식 이런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관건인데요. 저희들도 국가채무비율도 중요하고 재정수지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처럼 45% 이렇게 하면…… 사실상 지금 현재도 47.3%가 됐기 때문에 이미 초과한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당연히 국가채무 관리하고 재정건전화를 해야 되지만 고령화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그런 지출 소요가 굉장히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채무 속도 증가 이 비율을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국가채무비율과 재정수지를 동시에 곱셈 형식으로 하면 그런 것들이 달성될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예를 들면 저희들이 드린 표를 보시면 채무비

율이 한 60%, 그때 수지한도가 3% 이렇게 되면 이게 딱 걸리는 임계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47.3%인데 저희들이 21~25년 재정운용 계획 드린 것을 보면 코로나 위기 이후에 타이트하게 가더라도 25년에 58.8% 정도의 채무비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속도들을 계속 관리해 가면서 채무비율은 이런 정도 수준, 그런데 그게 되려면 수지가 한 3% 이 정도라든지 3%보다 내려가야 이게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것도 그렇게 느슨한 게 아니라 굉장히 타이트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준칙 적용의 예외사유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보기에는 추경편성 요건보다는 결국 이러한 코로나19라든지, 추경과는 약간 다른 형태로 규정을 하는 게 준칙 적용 예외에 대한 정당성이 부여될 것 같고요.

준칙 위반 시 조치에 있어서도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일단 예외기간 중에 증가한 채무를 바로 그것들을 반영하기에는 지금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반영하면 아마 재정 운용하는 데 너무 긴축적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단계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적용 시기 같은 경우도 당장 법 시행되고 나서 바로 시행할 거냐? 코로나 상황을 봤을 때는, 코로나 상황 같은 경우를 다 염두에 두었을 때는 2025년 예산안 편성 시부터 하는 게 어떨까 하는 것이고요. 25년 예산안에 편성을 한다면 24년에 25년 예산안을 제출하기 때문에 24년에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거슬러 올라가면 23년, 22년 이때부터 착실히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25년에 한다고 그래도 영향은 지금부터 계속해서 착실히 준비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숙 위원님.

○양경숙 위원 의사일정의 재정건전화법하고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반적으로 매우 신중해야 되고 저는 반대 의견이 더 많습니다.

사실 핵심적인 내용 중에 재정준칙의 국가채무비율 65%가 도대체 어떤 이론적 근거에서 이 목표치가 제시되고 있는 것인지, 근거는 뭔지, 이 또한 임의적인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지금 법률에 재정준칙을 규정하는 것 자체가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준칙 자체가 원론적으로 필요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주장이라기보다는 지금 맞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정부가 들고나온 것 자체에 동의하기가 어려운 거지요. 팬데믹 상황에서 국가재정의 역할이 소득의 재분배, 자원의 재분배 또 경기부양 이런 역할을 가장 절실하게 해야 될 이 시기에 이것을 들고나와서 이렇게 논란을 벌이게 만드는 것 자체를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법률에다가 재정준칙을 명시하는 것은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 국가재정이 유연한 대처를 하기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법으로 만들어 놓아서 재정준칙 때문에 필요한 어떤 정책적인 수단이나 재정을 투입해야 될 상황에서도 제대로 투입을 못 하게 되면 점점 꼬이고 꼬여서 나중에 재정건전성을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는 그런 위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논의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OECD 국가가 37개국인데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이 OECD 국가 중에서 채무비율이 가장 낮은 나라 3위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높지가 않은데 왜 지금 이것을 들고나와서 이렇게 시끄럽게 구는 거예요?

그리고 OECD 국가 전체 평균이 130% 넘어섰나요? 전에 122%였었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익원 예.

○양경숙 위원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건전한 겁니까? 아직 47%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건데, 상대적으로 본다면요.

그리고 2025년에 가서 만약에 지금보다도 더 큰 위험이 닥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있어요? 그러면 이 법을 만들어 놓고 법대로 지켜야 된다고 강변할 겁니까? 법 만든 지 이삼 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이 법 못 지킵니다’ 이렇게 할 겁니까?

또 하나, 페이코도 그래요. 페이코도 세입에 대한, 그러니까 재원조달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으면 지출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세입은 어디서 만들겠더라는 확보 방안도 마련을 하면서, 우리는 이렇게이렇게 세입·세수 확대 방안으로 세목을 늘린다는지 아니면 세금을 조정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면서 페이코를 주장해야지, 옛날 과거에 오래 전에 다른 나라에서 거론됐던 페이코를 지금 들

고나와서 페이지 어찌고저찌고 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제정법은 더더구나 동의하기가 어렵고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주장하는 재정준칙 등등 대부분에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서병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서병수 위원 저는 양경숙 위원님하고는 조금 반대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재정준칙이라든가 하는 재정건전화법안, 지금 현재 꼭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여태까지 GDP 대비 국가채무를 한 40%를 계속 유지해 왔지 않습니까? 갑작스러운 특별한 코로나라든가 사정이 있기는 했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채무가 너무 빨리 성장하고 있다.

요즘 최근에 보면 우리나라가 GDP 대비 가계부채가 세계에서 최고로 높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뿐만이 아니라 국가부채라든가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가 최고로 높다 이렇게 언론에서 제가 봤습니다.

지금 현재의 최저임금이 얼마나, 현재의 GDP 대비 가계부채가 얼마나, 국가부채가 얼마나 이것보다도 속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몇 년 전에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림으로 인해서 우리 국가경제가 위태위태했던 그런 시기도 있고 국가경쟁력이 굉장히 떨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5년간에 걸쳐서 해 보면 과거 박근혜정부 때나 이명박 정부 때에 비해서 최저임금이 많이 높은 것은 아니거든요. 평균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생각해 봤을 때 현재의 어떤 절대적인 크기보다는 빠르기라든가 급격한 변화 이런 것들이 우리 경제에 굉장히 심각한 충격을 줘 가지고 우리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국가부채가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기회 있을 때마다 빨리 줄이고 줄여 나가는 그런 원칙을 우리가 계속해서 실행해 나가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40%가 되어 있지만 그것이 45%가 되는 것이 맞는지 60%가 되는 것이 맞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준칙을 정해서, 기준점을 정해서 기회 있을 때마다 그것

을 줄여 나가야 되지 그러지 아니하고……

사실 우리나라가 대외 경제적인 변화에 굉장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갑작스레 들어온 어떤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우리가 버텨야 될 때는 국가라도 건전한 재정 여력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돌발 변수가 일어났을 때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쉽게 쉽게 써 버린다면 어떤 급작한 위기가 왔을 때 그것을 방어할 수 없다. 그래서 이런 재정준칙이라든가 재정건전화법안은 지금 이 시기에 꼭 필요한 것 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수고하셨습니다.

정일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일영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정부 측에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제출하셨는데 우선 순서대로 몇 가지 물어볼게요.

의원님들 안은 준칙 규정방식을 법률에 했는데 근거를 시행령에 한다는 거지요? 그 밑의 산식은 시행령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예, 맞습니다.

○정일영 위원 지금도 재정준칙하고 비슷한 것을 사용하고 계시지 않나요? 지금 아예 없는 건 아니잖아요. 내부적으로 유사한 게 있지, 재정준칙 비슷한 게.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저희들이 국가재정운용계획 이런 것 낼 때 결국 숫자들을 거기에 다 계속 받고 보이는 것 자체가, 국가채무비율·수지 이런 것 하는 것 자체가 사실 그런 것들을 담아서 하는 것이지요.

○정일영 위원 그러니까 국가예산 짜고 재정 운용하는 데 아무런 기준이나 원칙이 없지는 않잖아요, 가지고 있지.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예, 그렇습니다.

○정일영 위원 그런데 거기에도 이런 산식 이런 없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예, 그렇게까지 기계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이런 마음을 갖고 하고,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 수입·지출 균형부터 시작을 하지요. 수입·지출 균형부터 시작하고, 그다음에 경제여건 보고 세입여건 보고 그다음에 추계해 봐서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

○정일영 위원 이 산식을 누가 만들었어요? 어디 KDI나 이런 데서 연구해서 만든 건가요, 아니면 직원들이 그냥 만든 거예요?

○기획재정부재정혁신국장 나주범 산식에 대해

서는 제가……

재정혁신국장입니다.

산식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국가채무비율과 통합수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재정준칙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자 그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채무비율이 특정 한도를 넘어서면 재정수지를 어느 정도 줄이면 상쇄할 수 있을까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정일영 위원 제가 시간을 아껴야 되니까 제가 질문한 것에만 딱딱 답하시면 좋겠어요.

이 계산 산식이 깊은 연구, 어떤 전문기관·경제기관 이런 데서 용역을 했거나 연구를 한 것이냐, 아니면 그냥 국장님 부서의 사무관들이나 과장들이 만든 것이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기획재정부재정혁신국장 나주범 전문가들이랑 같이 해서……

○정일영 위원 KDI나 이런 전문가들하고?

○기획재정부재정혁신국장 나주범 예.

○정일영 위원 얼마나 같이 작업을 하셨어요? 구체적인 용역보고서 이런 게 나온 게 있나요?

○기획재정부재정혁신국장 나주범 이 산식 관련해서는 용역보고서는 없는데요 만드는 과정에서 전문가들과 협의를 여러 번 했었습니다.

○정일영 위원 그런데 국장님, 관리재정수지의 개념이 통합재정수지보다 더 정확한 개념 아니에요,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재정혁신국장 나주범 예.

○정일영 위원 그런데 의원님들은 관리재정수지를 썼는데 굳이 왜 여기서는 통합재정수지를 썼어요? 제가 이상해서 자꾸 묻는 거예요. 통합재정수지는 너무 폭넓은 개념이라 우리가 국가채무라든지 재정 관리하는 데 사실은 안 맞잖아요.

○기획재정부재정혁신국장 나주범 저희가 쓴 이유요 재정준칙을 발표하게 되면 국제적으로 다……

○정일영 위원 마이크를 가까이 하세요.

○기획재정부재정혁신국장 나주범 재정준칙을 도입하게 되면 국제적으로 공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국제적으로 비교가 되는데 저희만 관리재정수지를 쓰게 되면 설명도 어려워져 통합재정……

○정일영 위원 뭐가 어려워요?

○기획재정부재정혁신국장 나주범 설명이……

○정일영 위원 누구한테? 외국에?

○기획재정부재정혁신국장 나주범 예, 외국의 신평사라든가 국제사회에 ‘한국이 재정준칙을 도입했는데 이 기준입니다’라고 할 때 관리재정수

지를 쓰게 되면 굉장히 설명이 어렵고……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은 다 통합을 쓰거든요. 각자 비교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만 관리를 쓰게 되면 그런 것 하나하고요.

또 하나는 이게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을 관리하면 관리가 자동적으로, 그 비율 격차가 딱 1.8%로 묶여져 있습니다.

○정일영 위원 물론 통합 속에 들어가 있긴 한데, 그래서 통합이 폭넓은 개념이라 부정확하다는 것인데 외국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외국도 통합재정수지를 쓰니까 우리도 쓰고 싶다 그 얘기네요?

○기획재정부재정혁신국장 나주범 예, 다 통합 씁니다.

○정일영 위원 그러면 외국도 이런 산식을 써요? 외국은 이런 산식 안 쓸 것 같은데요.

○기획재정부재정혁신국장 나주범 외국은 왼쪽에 있는 게 대부분이고요. 그런데 나라별로는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선진국들은 이렇게 특정 한도……

○정일영 위원 그러니까 외국은 몇 % 이하 이런 개념으로 쓰는 것 같은데, 이런 산식 안 쓰지요?

○기획재정부재정혁신국장 나주범 그런데 위원님, 제가 한 가지 말씀만……

산식의 의미가요 여러 의미입니다. 60일 때 3.0%를 쓰고 65가 되면 2.8%를 한도로 하겠다 그것입니다. 산식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이 표를 표현한 것이고 60일 때 3인데 65일 때도 3을 쓸 거냐 그 차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65가 되면 수지한도를 좀 낮추자 그런 차원에서의 의미입니다.

○정일영 위원 그래서 그러는데요 의원님들 법안이나 외국의 법률을 보면 그냥 몇 % 이하,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인데 심플하고 간단하게 정리되는데 이것은 의외로 좀 복잡하거든요. 이렇게 복잡하게 하기 위해서 깊은 연구나 장단점 비교가 됐는지를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대통령령에 위임되는데 국회에서 심의도 안 받잖아요, 그렇지요? 여기에서의 가장 핵심은 이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이게 사실 법률에서 위임받아서 정부에서 이것을 정하는 것인데 정부에서 이것을 잘 정해야지 재정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사실은 국회에서 정부에 전권을 주는 건데…… 이것은 앞으로 국회 심의도 안 받거든. 시행령에 들어가면 기재부에서 그냥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또 바뀌도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자꾸 물어보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여기에 대한 확신이 안 서네요, 이 산식에 대해서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인데요.

그리고 어쨌든 이것을 아까 2025년 예산안 편성 시부터 하는데 준비하고 어찌고저찌고 하는데 여러 가지 단계별로 기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2025년이다 이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설명이 저는 클리어하지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 준비하는 데 2022, 2023, 2024, 2025 예산을 편성하니까 2024년 중반부터 한다 그러면 2년 반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아까 설명 들어 보면 이게 무슨 그렇게까지 필요하겠어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19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고 변동성이 크고 예측 가능성도 매우 떨어지는 시기인데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되나, 내가 아까 얘기한 산식 이런 것을 갖고 한 1년 정도 계속 공청회도 갖고 세미나도 갖고 하면서 더 정교하게 다듬고 또 필요하면 법률에 조금 더 원칙적인 구체적인—몇 %, 45 이런 얘기는 못 넣더라도—그것은 법률에 더 규정을 하고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은 최소로 하면서 한 1년 정도 더 연구를 하고 코로나도 좀 안정적인 시기로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시행을 해도 2025년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그렇게 급하진 않지요. 준비하는 데 2년 반씩이나 걸릴 이유가 없잖아요? 뭐 그렇게 걸리겠어요, 만들어서 시행하면 그냥 따르면 되는데.

차관님.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억원 그런데 이게 아까 양경숙 위원님도 그렇고 서병수 위원님 주신 그 고민들을 저희들이 다 담은 거거든요. 한편으로는 코로나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재정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속도가 계속 해서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국제사회가 우리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 같은 경우는 제일 잘해 왔고 대응도 잘했는데 이 속도가, 절대 수준은 굉장히 낮지만 속도가 느는 부분에 대해서 한국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것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 대외적으로는 시그널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신용평가사 할 때도 방식들이야 뭐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것을 한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고요.

그런데 고민은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당장의 코로나 상황인데 이렇게 다 손발을 묶어 버리면 안하겠다는 것이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준비는 하지만 그 시행 시기를 25년 정도로 해서 예측 가능하게 우리가 갖고 가겠다 이런 것들을 전해 주면 시그널도 그렇고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도 준비할 것은 준비하고 또 재정이 역할을 해야 될 것은 역할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아우르는 그러한 취지가 굉장히 강하다고 보겠습니다.

○정일영 위원 제가 작년 국감 때 같은데 부총리께 질의하다가 말았는데 지금 차관님 답변하시는 중에 보면 외국기관 얘기 나오거든요. 작년에 9월인가 그때 보면 피치사인가 신용평가사하고 우리 신용등급 협상한 게 있어요, 콘퍼런스 콜(conference call) 통해서 했던 것 같은데. 그때 보면 부총리께서 재정준칙을 도입한다는 얘기를 하셨지만. 사실은 그때 내가 더 이상 따지지 않았는데 국회의 동의나 국회의 어떤 의결이 없었는데 부총리께서 그것을 얘기했더라고, 외국 기관에다 대고. 사실은 절차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이지만 제가 더 이상 따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쨌든 신용평가사라든지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하면서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것은 국가 경제적으로 안 좋으니까 유지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참 고민스러운데……

일단 저한테, 이것 오늘 바로 이 시간에 끝내지는 않을 테니까 외국의 사례 한 번 쭉 보시고요. 그리고 산식으로 이렇게 꼭 정해야 되는 자료 있으면 한번 쭉 보십시오. 이 산식이 관리재정수지나 의원님들 이 산식보다 갖고 있는 장점, 저는 그게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차관님, 빛은 많을수록 좋습니까, 적을수록 좋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억원 적을수록 좋지요.

○소위원장 류성걸 그렇지요, 당연한 이야기를 제가 물어봐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빛을 내면서, 내야 되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 빛 많은데 나는 아직 빛이 적으니까 다른

사람 빛내는 만큼 그렇게 빛을 내도 된다, 그렇게 빛 많이 내서 쓰자 이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조금 전에 차관님 말씀하신 대로 당연한 우문을 내가 드렸는데.

그래서 지금 국가채무를 생각을 할 때 첫 번째는 상대편, 우리도 개방경제니까 당연히 다른 나라하고 비교도 해 보고 해야 되지만 절대적 재정건전성도 당연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빛내면서 국가채무가 다른 나라의 평균 얼마니까, 122%인데 우리는 지금 50%니까 ‘아이고 건전하니까 더 내 써도 되지 않느냐’ 이것은 말이 안 되는 논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가재정에 있어서 재정건전화법을 왜 만드느냐 하면 국가재정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새로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을 낸 것은 그만큼 우리 경제가, 우리 재정이 어렵다, 그리고 지금 관리를 해야 된다, 그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낸 겁니다. 국가재정법에서 규정한 대로 또는 관련되는 규정에 따라서 재정을 건전하게 하고 또 재정건전성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할 정도라면 법을 뺏아 버릴 만도 있겠어요?

또 세 번째는 지금 재정건전화 관련해서, 재정건전성 관련해서 재정이라는 게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이 있다고 하면 국가재정·지방재정이 연계가 돼 있습니다. 또 기금 당연히지요. 그다음에는 사회보험, 전부 연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재정건전화 관련된 규정이 국가재정법에 있다 하더라도 경제 주체에 따라서—가계부채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만—공공기관 포함해서, 그러니까 국가·지방, 국가 중에서도 기금·사회보험 그리고 공공기관 이런 공공 섹터에 관련되는 사항들을 전반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규율을 하고 관리를 하고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항으로 봐서는 국가재정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는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건전화법을 제안을 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지금 건전성, 재정준칙에 관련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나라의 국가채무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자체적으로 또 스스로 다른 나라하고도 비교를 하지만 평가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아까 여러 위원님들 특히 서병수 선배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규모 자체도 50.2%,

내년도에 1068조 수준이 되지만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 그것은 자타가 전부 다, 전문가뿐만 아니라 행정부에서도 다 그리고 외부의 기관에서도 전부 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평가예요. 증가 속도가 너무 급하다. 그리고 또 앞으로의 증가 속도, 이제까지 굉장히 급속한 증가가 이루어졌지만 앞으로는 더 해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를 것이다 하는 예측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이 자료는 자료를 주십시오—우리나라 현재 고령화지수 또는 65세 이상이 지금 한 14%, 15% 조금 덜 되지요. 그 수준에 있었을 때 다른 나라의 국가채무비율에 비해 따지면 우리나라가 절대로 낮은 수준이 아니다. 그래서 결국은 보면 단순히 숫자를 가지고 지금 다른 나라하고 비교했을 때 그것은 잘못된 비교다. 우리나라하고 같은 여건, 같은 수준에서 비교를 해야 비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듯이 국민연금 충당부채라든지 또 건강보험은 지금 기금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건강보험이든지 또는 공무원연금이든지 충당부채 관련해서도 이것은 언젠가는 채워 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또 고려를 해야 되고.

또 지금은 별로 이야기가 많이 안 나오지만 향후 우리 재정 소요에 아주 큰 게 통일이라든지 아주 큰 국가적 차원에서 고려해야 될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것은 결국은 독일하고 비교를 한번 해 봐야 될 거예요. 독일의 통일전의 국가채무비율하고 통일 이후에 급격하게 늘었던 통일비용 충당을 위한 국가채무 증가 이런 것도 다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지금 단순히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를 다른 나라 OECD 국가 평균으로 해서 하는 것인데 그 평균의 함정 중에서는 아까 이야기했던 고령화지수라든지 또 충당부채 관련되는 것을 포함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축통화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급격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따라서 60%, 3%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기축통화 기준이에요. 우리나라는 기축통화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축통화가 아닌 국가들을 평균하면 40%예요. 제가 알기로는 한 46%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는 거기에 비슷한 수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장 세계적인 기축통화는 달러고 그다음

에 유로화, 엔화 또 중국의 위안화 포함해서 지금 기축통화 바스켓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따져 보면 우리하고 다르다 이것이지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보면 국가채무의 또는 가계 부채의 질을 이야기할 때 그 가계부채가 예를 들어서 다중 채무자인지 또는 이런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국가채무의 경우에 적자성 채무와 금융성 채무의 비율을 보시면 10년 전에는 50 대 50 정도 됐어요. 적자성 채무와 금융성 채무가 50 대 50 됐는데 지금은 거의 한 68, 66 이 정도 됩니다.

결국은 뭐냐 하면 적자성이 급격하게 늘어나서 자산을 가지고 있지 않는 부분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국가채무의 질이라는 차원에서 봐서도 단순히 외국과 또는 과거와 비교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따져 본다면 지금 현재 국가재정법에 있는 몇 개 조항을 가지고는 전체 재정건전성 관련해서 규율하기가 어렵고 또 관리하기가 어렵고 또 앞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재정건전화에 관련되는 법을 제정해서 전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차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조금 더 넓게 이야기하면 아까 가계부채 말씀도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부채경제, 부채경제학에 대해서 앞으로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경제 주체의 소득이 일정하다고 하고 또 소득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미래의 소득을 당겨 와서 쓰는 채무경제가 앞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겠다. 그렇게 따지면 채무경제를 건전하게 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이것은 결국은 미래세대, 청년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지금 청년들이 왜 분노를 하고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겠지만 재난지원금 좀 더 하자고 하면 청년들은 거의 60%, 70%가 반대예요. 왜? 그것 기성세대가 전부 다 나누어 쓰고 나중에는 미래세대, 청년세대가 결국은 갚아야 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반대예요. 그것하고 똑같이 미래세대를 생각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재정건전화 관련된 사항이 절대로 지금도 빠르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재정준칙 관련해서, 차관님!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익원 예.

○소위원장 류성걸 이제까지 그런 자료가 없었는데 재정준칙 도입한 나라가 몇 개 국가가 되지요? 도입한 나라의 재정준칙 관련되는 사항을 상세하게 국가별로 정리를 한번 해 주십시오. 물론 카테고리를 묶어 주시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수입준칙 있고 지출준칙 있고 증가율 준칙 있고 수지준칙 있고 국가채무준칙 있고 또 페이 애즈 유고(Pay as you go) 시스템도 있고, 하여튼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60%분의 국가채무비율 곱하기 -3%분의 통합재정수지’ 해 가지고 1보다도 작거나 같다 이런 형태로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게 있는지—아까 정일영 위원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그것을 정리를 해서 각 국가별로 재정준칙의 가장 간단한 수입준칙, 지출준칙부터 정리를 해 주십시오.

한번 묻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아주 정리를 잘하셨는데 이게 뭐냐 하면 재정준칙, 지금 현재 정부가 제안했던 재정준칙의 허상이랄까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정리를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 19쪽에 보면 아주 적나라하게 예시를 들어 놓았어요. 지난번에 제가 국정감사 때도 그렇게 했더니만 저보고 ‘너무 극단적인 경우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기에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고 계산을 해 보면 그렇게 돼요.

예를 들어서 ‘다만,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한 고려도 필요’ 짝 굿고 동그라미, 짝 굿고 동그라미 두 개 땡땡 해 놓았는데 거기를 보면 사실 재정준칙, 정부에서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시행령에 넣을지 안 넣을지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정부가 발표한 재정준칙은 보면, 예를 들면 하고 짝짝 해 놓은 것을 보면 제가 평가를 조금 더 박하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진짜 말하여 웃기는 소리예요.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라도 예를 들어서 재정수지가 흑자일 것 같은 경우 국가채무비율은 무한대예요, 무한대.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것 극단적인 경우가 아닙니까?’ 하는데 왜 극단적인 경우예요? 과거에 통합재정수지는 2017년 이전에, 2019년 이전에는 플러스였어요. 그렇게 따지면 이 산식을 집어 넣으면 무한대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국가채무비율이 GDP 대비.

또 한 가지 반대로 국가채무비율이 60% 보다도 낮은 경우에는 재정수지준칙 관련해서 -3%, 항상 마이너스 돼도 관계 없다는 이야기예요, 60%가 안

되면, 또 거꾸로 이야기하면 국가채무비율이 60%가 넘는다 하더라도 3%가 안 되면 재정수지는 항상 -3% 되는 만큼의 재정수지가 항상 마이너스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좋게 이야기를 하면 준칙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하지만 너무나 허점이 많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형태의 재정준칙이라는 게, 19쪽에 아주 정리를 콤팩트하게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재정건전화법을 새로 만들어서, 지금 하더라도 늦을 거예요.

그리고 40쪽에 독일은 헌법 대신에 기본법이라고 하지요, 그렇지요? 기본법 제115조제2항에 보면 거기에는 숫자 자체를 아주 '0.35퍼센트'라고 해서 못을 박아 놔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슨 경직성이니 이런 말씀도 또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재정건전화라는 게 재정이 건전하게 되도록 하고 또 예외도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한 개만 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0.35%라는 것을 헌법에다가 명시할 정도가 된다면, 그리고 난 뒤 이후에 유럽에서 여러 나라들이 재정건전화 노력을 해서 아주 특히 특징적으로 독일은 80% 중반까지 갔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대로 떨어졌어요, 이 헌법이 개정되고 난 뒤에. 그것은 결국 뭐냐 하면 그렇게 강력하게 시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준칙도 단순히 하면서도 법에 규정을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 차관님 답변하실 사항 있으면 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억원 말씀 주신 것 맨 마지막에 '하고 싶은 대로 정부가 한다' 그런 부분이었는데 수치상으로 사례상으로 이런 경우가 나올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들을 봤을 때 정부가 어떻게 지켜 나갈 수 있을지 그리고 사회적으로 얼마나 바람직한지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고민해서 이렇게 했어요.

하나를 맞춰서 한다, 45% 도달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은 너무 경직적이고 우리 현실 상황에서 45를 맞추는 것은 사실 거의 지출을 계속 줄이거나 그러지 않고서는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그런 노력 한번 해 보셨어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억원 예, 그래서 노력을 해서 21년~25년 저희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여드렸고요. 거기서조차도 저희들이 23, 24, 25 지출증가율을 굉장히 적게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58.8% 채무비율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리는 그림들은 결국은 25년의 58.8% 그 이후에 어떻게 가져갈 거냐 그 부분들 같은 경우 저희들이 보기에는 통합재정수지를 -3%나 약간 그 아래쪽으로, 그래도 그게 거의 정상성장률 수준으로 우리 지출을 끌고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그렇게 못 가고 거의 성장하는 수준 정도로 지출, 그러니까 적극적인 걸 못하는 거지요. 그 정도가 돼도 지금 보면 채무비율이 3%씩 계속 누적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60이 넘어가고 넘어가고 넘어가고. 그렇지만 그런 속도로 그 정도까지 관리해야 지속 가능하지 않겠냐.

아까 극단적으로 결국은 빚을 안 내면 제일 좋지요. 그것은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빚을 안 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지만 사정이 그렇지 않다면 어떤 경우에는 빚을 낼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내되 그것이 좀 더 효과적이고 그리고 지속 가능하게 관리 가능하고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게 저희들 생각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제시했던 것은 우리가 현실을 봤을 때 하나하나 채무비율, 관리수지 이렇게 딱딱 해서 하는 것보다는 결합해서 하는 게 우리 현실에 맞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고민들이 있었던 부분이라는 것을 설명드리고요.

여기서처럼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통합재정수지가 플러스가 났으면 좋겠습니다. 플러스가 나면 당연히 이 산식은 항상 충족이 되는 거지요. 그렇지만 통합재정수지가, 아주 과거에 사회보장성 기금들은 당연히 플러스였기 때문에 통합재정수지가 관리재정수지의 마이너스를 만회해서 상회해서 플러스가 났지만 지금은 계속해서 마이너스고요. 고보 같은 경우는 적자도 났고요. 그래서 앞으로 통합재정수지에서 플러스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60%보다 낮아지는 경우는 오히려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 기준이 완화된다고 그랬는데 아까 기준점을 25년으로 보면 58.8%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 더 낮아지기는 사실 쉽지 않은 그런 측면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부재정혁신국장 나주범** 위원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무한대 얘기하셨잖아요.

○**소위원장 류성걸** 뭐라고요?

○**기획재정부재정혁신국장 나주범** 저희 산식에 의하면 이론적으로는 무한대로 가는데요, 저희가 60이면 3이고 65가 되면 2.8로 떨어져 가지고 시물레이션해 보면 일정 수준으로 올라가다가 속도에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더 이상 올라가지가 않는 구조입니다. 무한대는 저희 산식에서는 시물레이션해 보면 그렇게 안 나오고요. 일정 수준에서 올라가다가 안정화되는 그렇게 돼 있고요.

○**소위원장 류성걸** 통합재정수지가 플러스면 무한대로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기획재정부재정혁신국장 나주범** 이론적으로는 그런데요 저희 시물레이션해 보면 그렇게 안 나오고 IMF에서도 저희 준칙을 평가하면서 그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예, 알겠습니다.

양경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양경숙 위원** 국가 경제 상황이 여유로울 때 재정을 긴축해서 비축을 하고요 그다음에 경제상황이 어려워지면 비축해 놓은 재정을 풀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선순환 구조가 발생을 하게 되잖아요. 재정을 풀면 경기가 나아지고, 재정의 제일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가 경기 부양의 기능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세금이 더 들어오게 되면 또 선순환이 되고 이것을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지금은 재정을 풀 때인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기본적인 원칙에 충실하기를 바라구요.

각 나라가 재정준칙을 도입하고 있다, 재정준칙을 도입한 나라가 몇십 개 나라다 이렇게들 주장을 하고 이것을 근거 삼고 있는데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계기가 있어요, 각 나라가.

재정이 어려울 때 도입한 나라 있어요? 몇 개나 있어요? 이렇게 경기가 어렵고 재정 상태가 굉장히 어려울 때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나라는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각 나라, 몇십개 나라 재정준칙을 도입한 계기를 다 자료로 제출하세요. 연도별로 언제 어떤 계기로 재정준칙을 도입하게 됐는지. 그리고 재정준칙을 도입한 시기 전후해서 그 나라의 경제성장률은 어떤 상태였는지, 재정 상태나 경제 상황은 어떤 상태였는지 이런 것들도 제출하세요.

그리고 여기서 채무비율 60%를 계속적으로 주

장을 하고 있는데 아까도 제가 그랬지요, 어떤 이론적 근거가 있고 어떤 사례가 있느냐. 사례가 뭔지 아세요? 아시기는 아시는 거예요?

90년대 중반에 유럽연합을 만들면서 채무비율 유럽 나라를 다 계산했더니 평균 60%였던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은 지금 25년이 지나 가지고 우리나라에 가지고 와 가지고 '2025년에 우리 채무 목표 60%로 유지하려고 그래요'라고 하면서 재정준칙을 들이밀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게 맞는 겁니까? 다른 근거 있으면 말해 보세요. 못하잖아요. 근거 없지요? 60%가 도대체 무슨 근거인지 설명을 못 하고 있잖아요.

○**기획재정부재정혁신국장 나주범** 그것은 제가 설명을, 제가 이것을……

○**양경숙 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채무비율이 빠르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왜 제대로 설명을 못 합니까? 채무비율이 빠를 수밖에 없지요, 채무의 규모가 적으니까. 100조에서 1%하고 10조에서 1%하고 규모 자체가 다르고 속도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나라랑 비슷한 나라……

재정규모라는 게 뭐예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이 우리 재정규모의 대상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나라의 예산이라든지 기금의 종류가 다 달라요, 나라마다. 그러면 우리나라랑 재정 규모가 비슷한 나라의 채무증가 속도를 가지고 말씀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소위원장 류성걸** 양 위원님……

○**양경숙 위원** 그런데 그것 설명을 하고 있지 못하잖아요. 안 하고 있잖아요. 조사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요, 제가 조금 더 말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아니, 손으로 탁자를 치니까 올려서 그래요.

○**양경숙 위원** 또 하나는 마치 정부가 엄청나게 빚을 내 가지고 재정을 방만하게 쓰고 마구잡이로 돈을 쓰고 있다는 식으로 공격해 오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그런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IMF가 조사한 것에 의하면 코로나19 경제충격에 대응하는 우리나라의 재정지출 규모가 국제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2021년 2월 16일 날 발표를 했고요, 공식적으로. 또 IMF가 주요국의 코로나19 대응 재정지출 규모에 따르면 국내총생산 대비 재정지출이 우리나라가 3.4%밖에 되지 않는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정부의 작년 4회 추경 등 코로나 재정지원 규

모가 그때 90조 원을, 4회 추경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최종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90조 원으로 계산해도 우리나라가 4.7%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경제대국 14개국 중에 우리나라가 11위 정도 밖에 지출하고 있지 않다.

이런 보고들에 대해서 여러분은 왜 반론을 제대로 제기하지 못합니까?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 듣고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재정혁신국장 나주범 60%, 제가 직접 담당했었기 때문에 그 이유를 아는데 외국 유럽연합의 60%를 본뜬 건 아니었고요 독일 사례를 보니까 5년의 유예기간을 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5년의 유예기간을 두면 25년이 적용 시기였었고 그때 중기계획상 25년도 숫자가 거의 60에 가까이 갔었습니다, 그래서 60이었고. 통합재정수지도 그때 거의 3%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재정여건상 25년도에 국가채무가 60%, 통합재정수지가 3%였기 때문에 그것을 도입을 한 거고요.

다만 저희는 이게 만고불변의 채무비율이 아니고 5년마다 혹시 재정환경이 변하면 검토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 숫자를 썼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경숙 위원 그 60%는 유럽연합의 평균 채무비율이었어요. 그때 당시의 독일하고 지금 우리하고 같아요, 상황이? 독일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5년 단위로 평가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거나, 그거나 그냥 벤치마킹한 거지 상황 자체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소위원장 류성걸 그래서 이론적 근거랄까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3%와 60% 관련되는 것을 한번 주시고요. 그것은 경제성장률 5%를 기준으로 해서 수립하는 조건으로 -3%의 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냈던 걸로 그렇게 기억합니다.

어쨌든 차관님께서 나중에 관련되는 서류를 전부 다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숙 위원 죄송하지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정일영 위원 질의 좀 합시다, 위원장님.

○소위원장 류성걸 잠깐만요.

○양경숙 위원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이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저는 빚을 많이 내라고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빚을 적게 내는 방법을 강구하세요. 그 방법 중의 하나가 기금 여유재원 몇백조 있잖아요, 몇백조. 몇십조도 아니고 몇백조. 사회보장성기금 빼고도 몇백조 있습니다.

자금이 여유롭게 있고 쓰지도 않는 돈이 낮은 이자에 은행에 수백조씩 예치되어 있는데 그것을 우선 갖다 쓸 생각을 해야지 왜 빚을 내려는 것을 더 우선합니까?

○소위원장 류성걸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정일영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답변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빚을 적게 내는 방법 중에 기금 여유재원을 활용하라는 데 그렇지 않아도 그렇기 때문에 공자기금이라는 것들이 그나마 기금 여유재원이 있는 것들을 효율적으로 돌려서 더 적은 적자국채를 발행할 수 있게 여유자금을 순환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또 기금은 특성상 단년도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여유자금들은 있는 거고. 다만 그 여유자금들을 얼마나 단기적인 미스매치들을 저희들이 최소화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게 낼 수 있는지 그것은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들이 60이란 숫자가 유럽연합의 그런 것도 있겠지만 담당 국장이 얘기한 대로 25년에 어떤 모습인지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거기서 어떻게 관리해 나갈까 하는 과정에서 나온 숫자, 아까 말씀 들으신 대로 제가 근거 자료들 같은 경우는 제출해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적극적인 재정정책 강조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코로나 위기 과정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은 당연한 거고요 국제기구도 그렇게 하라고 그랬고요 저희도 그렇게 따랐고요 저도 그게 필요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사이클상 저희들이 적극적인 재정정책 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저는 미래 투자라고 봅니다.

그리고 양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저금리 시대에는 재정정책의 효용성이나 유용성은 더 높아지는 거고요. 다만 단기 사이클과 아울러서 구조적으로 재정관리를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느냐 그 고민들이, 두 가지 측면이 어떻게 보면 상충되기도 하지만 또 같이 풀어야 되는 그런 고민들이 결과물이 이런 재정준칙으로 나왔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정일영 위원님 말씀하십시

오.

○정일영 위원 제 질의는 길지 않습니다.

재정준칙 법안 관련해서, 제정법 지난번에 공청회는 했지요, 그때? 우리 위원회에서 공청회 했지요?

○수석전문위원 정연호 안 했습니다.

○정일영 위원 안 했어요? 제정법은 하게 돼 있지 않나요?

○소위원장 류성걸 이것은 제정법이기 때문에 할 거예요.

○정일영 위원 아직 안 했나요?

○수석전문위원 정연호 예, 아직 안 했습니다.

○정일영 위원 그래요? 하여튼 절차적으로 하게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소위원장 류성걸 예, 해야 됩니다.

○정일영 위원 어쨌든 저는 지금 이게 다 우리 국가재정을 잘 운용해서 나라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제정법도 내고 개정안도 내고, 그래서 좋은 취지가 이해가 가고요. 또 이게 그런 면에서는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용을 어느 정도로 넣을 건지 어느 시기에 넣을 건지 그게 중요하지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제정법보다는 정부의 국가재정법 개정안 이런 형태로 가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통합재정수지 산식에 대해서 한번 여쭙았던 거고 그게 꼭 필요하다면 시행령에 넣어야 되겠지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저야 이견이 없고요.

그런데 궁금한 것은 준칙 위반 시 조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재정준칙을 지키지 않고 위반했을 때 조치할 내용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의원님들 안에 보면 그런 위반 시 조치의 성격으로 보이는데 정부안에 있는 것은 요약표에 보면 예외기간 중 증가채무는 단계적 준칙에 반영, 예외사유 소멸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동안 건전화대책 마련 의무화. 그런데 이게 예외사유 소멸이 아니고 예외사유 이런 것에 관계없이 준칙이 위반되었을 때 조치 내용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법령에 뭔가 규정이 잘못됐든지 요약이 잘못됐든지 둘 중에 하나 같은데, 어떻게 봐요?

○기획재정부재정혁신국장 나주범 그걸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안에는 준칙 기준이 45%이기 때문에 준칙 위반이라는 말을 안 쓰고요, 45%를 초과할

경우에 감축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일영 위원 그게 일종의 위반으로 본 거지요.

○기획재정부재정혁신국장 나주범 예, 저희는 45%가 아니라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평시에는 준칙이 될 텐데 저희가 예외사유일 때는 기준을 오버하게 됩니다. 그래서 준칙 기준을 오버해서 채무 증가가 되기 때문에 예외기간 동안에, 위기 등……

○정일영 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준칙에 적용되는 예외규정에 따라서 오버한 것은 준칙 위반이 아니지, 정확히 말하면.

○기획재정부재정혁신국장 나주범 예, 아닙니다.

○정일영 위원 예외기간이 아닌데도 준칙을 위반했을 때 어떻게 조치할 거냐 그게 규정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요약이 잘못된 거예요, 규정이 잘못된 거예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아닙니다. 저도 동일하게 문제 제기를 했었고요.

이게 뭐냐 하면 이것은 예산편성 단계에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한 게 이 준칙이 설정한 범위를 넘어설 거냐 안 넘어설 거냐.

○정일영 위원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그런데 이것은 아예 안 넘어선다는 전제입니다. 그게 있기 때문에 정부가 편성할 때 적게 편성하든지 뭘 해서 결국 안 넘게 편성을 해 줘야지……

○정일영 위원 그러니까 재정준칙을 완전히 지킨다라는 전제하에서 만든 거예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예, 그렇습니다.

○기획재정부재정혁신국장 나주범 위반을 전제로 해서 만든다는 게 좀……

○정일영 위원 그러면 이게 법조문인데, 요약해서 모르겠는데요, 법조문에 이런 ‘준칙 위반 시 조치’ 이렇게 들어가서는 안 맞을 것 같아요.

○기획재정부재정혁신국장 나주범 이렇게 안 들어갑니다.

○정일영 위원 그것은 아니잖아,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재정혁신국장 나주범 예.

○정일영 위원 그러면 재정준칙을 항상 딱 준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없을 것 같은데 상황에 따라서는, 예산편성할 때.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그 상황이 예외 상황일 거냐, 코로나 같은……

○정일영 위원 아니, 예외 상황 말고. 예외 상황은 법조문에서 예외를 인정해 줬으니까 하는 거

고.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재정준칙을, 여러분들이 정부에서 정하고자 하는 재정준칙이 100% 예산 편성할 때 지켜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가정을?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예.

○정일영 위원 만약에 위반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정부가 사실은 알면서도 그렇게 위반하는 것 자체가 아마 국회에서 받아들이시기가 쉽지 않으시겠지요. 왜냐하면 지출 부분 통제가 될 거거든요, 결국은. 수입을 더 건어라가 쉽지 않기 때문에 지출을 줄여라가 되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정일영 위원 그러면 그렇게 정부안이 국회에 넘어왔어요. 예산심의 과정에서 증액이 됐어. 결과적으로 재정준칙을 위반하게 된 거야, 모양새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그러면 정부가 증액 동의를 할 수가 없지요. 사실 정치적으로 정부가 약속한 게 있는데 그게 넘어가는 것을 보면서 정부가 동의…… 정부가 동의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정일영 위원 어쨌든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삭감한 것 가지고 증액은 가능하지만 순증에 대해서는 정부 측이 동의를 안 한다, 무조건 그것은 안 된다 그 얘기인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여기서는 정부안 편성 시 준칙이라고 합니다, 정부안 편성 시 준칙.

○정일영 위원 법규정에 정부안 편성 시 준칙 이렇게 돼 있어요?

○기획재정부재정혁신국장 나주범 예.

○정일영 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하면 되겠네.

어쨌든 거기를, 제가 질문한 그 뜻은 알겠지요?

○기획재정부재정혁신국장 나주범 예.

○정일영 위원 위반 그런 것하고 조문상 문제가 없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준칙 적정성 검토에도 보면 의원님들 안은 여기에 국가채무비율 45% 이하 유지, 관리재정수지 적자 2% 이하, 3%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걸 5년마다 검토해서 그 수치가 맞는지를 보고 변경하든 조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정부안에서 5년마다 검토한다는 게 뭘 검토한다는 건지, 정부안에는 이 수치가 안 들어가 있잖아요. 재정준칙의 근거만 들어가 있

고 원칙적인 얘기만 들어가 있는데 5년마다 검토한다는 것은 시행령을 검토한다는 거예요, 뭘 검토한다는 거예요?

○기획재정부재정혁신국장 나주범 시행령의 산식을 검토한다는 겁니다.

○정일영 위원 시행령 산식을?

○기획재정부재정혁신국장 나주범 예, 시행령에 있는 준칙의 기준.

○정일영 위원 그게 법령상 괜찮은가요? 시행령에 위임돼 있는 산식을 법에서 5년마다 검토하려고 규정하는 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이상하기도 한 것 같은데.

○기획재정부재정혁신국장 나주범 법제처 심사는 거쳤습니다.

○정일영 위원 거쳤어요?

○기획재정부재정혁신국장 나주범 예.

○정일영 위원 문제 없대요?

○기획재정부재정혁신국장 나주범 예.

○정일영 위원 그러면 그것도 명확히 해 가지고. 검토한다는 것은 바꿀 수도 있고 안 바꿀 수도 있다 그런 의미네요,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재정혁신국장 나주범 예.

○정일영 위원 법조문에 정확히 뭐라고 들어가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기서 검토한다는 것은 시행령 산식으로 보이기는 해요. 그래서 법조문을 좀 클리어하게 해 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고.

하여튼 저는 제가 지적한 이런 문제점을 클리어하게 해서 국가재정법 개정안으로 재정준칙을 잘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은 국가재정 운용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자료 한 개를 더 준비해 주십시오. 뭐냐 하면 아까 60%,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60%, 3% 적자 관련해서 그것 관련된 수식이 있어요. 그것은 경제성장률 5%를 가지고 수렴할 수 있는 조건을 내면 3%가 나와요. 그래서 45%를 넣어서 성장률을, 지금 우리 성장률이 올해 내년 예산에 4.2%예요, 그렇지요, 경상성장률?

○기획재정부재정혁신국장 나주범 예.

○소위원장 류성걸 그러니까 성장률 퍼센트 5%, 4%, 3% 이런 항목별로 수렴할 수 있었을 때 적자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게 -3%하고 -2%인데 제가 났던 것은 45%에 5% 성장을 한다고 하면 한 2% 정도 돼요. 그래서 그 관련되

는 수치를 시뮬레이션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냥 넣어 가지고 60%니까 턱 찍어 가지고 3% 넣은 게 아니라 다 계산을 해 가지고 그렇게 넣은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 관련되는 자료를 정리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서병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병수 위원 여기 재정준칙 산식에 이렇게 보면 저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보는데 한 가지는 이것을 곱하기한 이 계산식이 1.0을 넘지 않아야 된다. 이런 것은 만일에 1.0이 넘었을 경우에는 준칙 위반 시 조치에 상응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 감수하겠다는 이런 뜻일 거고요.

또 두 번째 여기 함축돼 있는 것은 뭔가 하면 정부가 국가채무비율이라든가 통합재정수지비율을 이렇게 좀 머니플레이팅(manipulating)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 아까 류성걸 위원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통합재정수지 흑자 발생 시 국가채무비율이 무한정 허용된다 이런 점도 약한 고리거든요. 이런 것을 좀 잘 어떻게 원용을 하면 기재부가 이런 것들을 마음대로 확장정책을 쓴다든가 할 수 있는 여지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또 그 위에 것 보면 국가채무비율이 60%보다 낮아지는 경우에는 오히려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기준이 완화되어 가지고, 예를 밑에 들어왔네요, 국가채무비율이 50%인 경우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3.6%까지 허용되므로 정부에게 확장적 재정정책의 유인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런 지적까지도 해 놓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어느 정도까지는 임의적으로, 예를 들어서 통합재정수지비율이 높아지면 국가채무비율을 조금 낮춘다든가 국가채무비율이 높으면 통합재정수지비율을 임의적으로 낮춘다든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일정 수준의 재정수지를 지키는 그런 것을 피해 가려고 하는 혹시 그런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산식으로 대입을 해 보면 이런 경우가 생기고 저런 경우가 생기는데 지금 47.3%잖아요. 그리고 통합재정수지가 한 -4% 되나요? 그렇게 되면 내년, 내후년 어떻게 될 거냐 보면 통합재정수지는 계속 마이너스로 갈 겁니다. 지금 수입보다 지출이 경상성장률만 잡아도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통합재정수

지가 마이너스가 되면 국가채무비율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통합재정수지가 마이너스가 나는데 국가채무비율이 더 떨어질 수는 없거든요.

하나는 계속 플로(flow)로 마이너스를 계속 내는 거고 그게 쌓여 가지고 스톡(stock)으로 국가채무비율이 계속 올라가고요. 올라 올라가서 보면 25년에 가면 이게 -3%씩 계속 내다 보면 47.3이었던 애가 58.8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점에서 어떻게 관리해 나갈 거냐, 그런데 그 전 단계에서 47.3에서 58.8로 가는 와중에 만약에 60보다 낮으니 여기서처럼 50이 된다면 그때는 -3.6이 나면 ‘야, 이것 확장적 아니냐’ 이러는 건데 지금 그 시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결국 불가피하게 그렇게 가는 와중에 25년에 가서 58.8과 그때 또 단년도로 -3% 난 그 시점 이후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니까 우리가 의도적으로 거기를 그렇게 해서 일부러 거기서 더 늘리거나 그런 상황은 발생되지 않는 겁니다.

○서병수 위원 선의로만 한다면 차관님 말씀이 맞겠는데 또 돌발적인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이 지휘를 했을 경우에는 곤란한 경우도 안 생기겠느냐 그런 이야기고.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그런데 그건 보일 겁니다.

○서병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준칙 적용 예외가 있는데 이게 너무 좀 방만하지 않느냐, 좀 더 엄격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 전시·사변이나 대규모 재난, 세계 금융 위기, 코로나19에 따른 위기 등 성장·고용상의 중대한 변화라고 한다면 이게, 요즘도 추경 편성하는 데도 이런저런 여러 가지 그런 제한을 해 놔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 마음대로 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준칙적용의 예외를 좀 더 엄격하게 해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해서 꼭 필요한 때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고요.

제가 존경하는 양경숙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 자꾸 토를 다는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지금이 재정을 풀어야 될 때라고 생각하세요, 차관께서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그것은 저는……

○서병수 위원 우리가 재정을 푸는 중요한 목적이 뭐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결국 재정을 푼다

는 게 돈 수지 개념도 있지만 재정정책이 과연 뭘 거냐의 문제가 있거든요.

○서병수 위원 글썄,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재정정책이라는 게 결국은 아주 단기적으로는 단기 경기변동 완화가 있는 거거든요. 어려울 때는 정부가 들어가는 거고.

○서병수 위원 글썄, 그래서 그런 경기 활성화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근본적으로 나는 일자리 창출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일자리 창출이 재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느냐. 물론 지금과 같은 비정규직이라든가 단기 알바라든가 이런 일자리들이야 수도 없이 만들어지겠지요. 현 정부 들어와서도 80만 개 이상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속 가능한 제대로 된 퀄리티가 있는 그런 일자리가 만들어지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보다는 오히려 규제를 완화한다든가 여러 가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 생각을……

그런 측면에서도 보면 재정은 있다고 해서 평평 쓸 것이 아니라 있으면 자꾸 재정건전화를 위해 가지고 우리가 비축을 해 놔다가 긴급하고 필요한 때 딱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그러면 각 항목별로 잠정 의견 또는 보류, 계속 심사를 정하겠습니다.

3쪽 제정안·개정안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금 제정안과 개정 관련된 사항이 의견이 엇갈리기 때문에 이것 관련해서는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쪽 목적과 정의 관련해서 특별한 의견이 있습니까?

특별한 의견 없으시면 관련된 사항 중에서 국가재정법 제2조제2항에 관련되는 중앙관서의 장에 갈음하여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 8쪽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 및 재정건전화 책무 관련된 사항입니다.

검토의견대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재정전략위원회 신설 관련된 사항입니다.

○정일영 위원 위원장님, 전반적으로 저는 이것을 다시 좀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소위원장 류성걸 그러니까 전체 그것은 제일 첫 번째……

○정일영 위원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정안이 좋다고 보고요. 제정안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다 어렵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그러면 제정안과 개정안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렇게 하겠고요. 제정안에 관련되는 사항은 제외하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항은 제정안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준칙 법제화 관련된 사항은 개정안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안의 경우에는 세계 금융위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등 관련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고 윤희숙 의원안은 그것과 다른 엄격한, 0.5% 이하면 균형으로 간주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앞의 류성걸·송언석·추경호 의원안은 추경편성 기준과 같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관련되는 사항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정부가 제정준칙 적용 예외 사유를 범위를 설정할 때 이것은 좀 엄격하게 하려고 제정준칙을 세웠는데 너무 또 적용을 풀어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현재 추경요건보다 더 엄격하게 범위를 좁혀서 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시·사변 이것은 대부분 동의할 거고요, 대규모 재난도 마찬가지고, 이럴 때는 정부가 불가피하게 지출이 늘어나는 부분들은 제정준칙에서 잠시 예외를 뒀다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이런 걸 겪으면서 결국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나 출렁이는지, 그것에 따라 재정수요가 얼마나 바뀌는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로 하고 그런 ‘위기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위기로 성장·고용상의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렇게 해서 저희는 굉장히 제한적으로 범위를 좁혔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그러면 지금 현재 추경 안에 ‘경기침체, 남북관계의 변화 등’ 했는데 ‘등’ 속에 조금 전에 정부안에서 이야기하는 ‘세계 금융위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에 따른 위기’ 이걸 그 안에 포함시킬 수는 없나요?

‘등’에 관련되는 게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느냐, 나주범 국장님?

○**기획재정부재정혁신국장 나주범** 방금 말한 대로 저희는 추경보다 좀 엄격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준칙 면제 사유는 추경 사유가 아니라 좀 더 엄격하게 세계 금융위기 등 성장·고용상에 엄청난 충격이 있을 경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 편성 사유가 아니고요 준칙 예외 사유가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그것은 정부안이고 전체를 다 같이 보니까 다른 의원안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쭙보는 거예요.

○**기획재정부재정혁신국장 나주범** 저희는 추경 편성 사유보다는 별도로 예외 사유가 필요하지 않을까……

○**소위원장 류성걸** 이것은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들이고 해서 하나하나 제가 보는 겁니다.

수석전문위원님, 17쪽에 관련되는 사항은 여기에 같이 들어가네요, 그렇지요?

국가채무비율 45%, 관리재정수지 적자 2% 포함한 이 사항도, 준칙 산식에 관련되는 사항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병수 위원** 이것 공청회 하신다면서요?

○**소위원장 류성걸** 예, 할 겁니다. 일단 지금 현재 잠정으로 그렇게 하고 공청회 하고 다시 볼 겁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연호** 다음은 37쪽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37쪽의 바항에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바항은 세계잉여금을 활용한 채무 상환 확대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지금 현재 세계잉여금 처리 순서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부안은 국가채무상환을 세계잉여금에서 교부세·교부금 빼고 공적자금상환기금 빼고 했을 때 30%인데 50%로 하도록 한 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좋습니다. 이것은 50%로 하겠습니다.

○**서병수 위원** 잠깐만요, 이것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지방교부세 정산과 공적자금 상환하는 것을 빼고 나머지 세계잉여금 중에서 50%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그래서 이것은 국가채무 상

환에 더 적극적인 조항이기 때문에 합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수지통제계정 설치를 통한 국가채무 관리입니다. 윤희숙 의원안입니다.

이것은 아까 의견으로서 계속 계류, 심사하겠습니다.

아항, 44쪽입니다. 44쪽 관련해서도 계속 계류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47쪽 사항입니다. 국세감면율 한도 준수 의무화 관련된 사항입니다.

○**서병수 위원** 아부터는 다른 것 아닌가요?

○**소위원장 류성걸** 어떤……

○**서병수 위원** 아항부터는……

○**소위원장 류성걸** 아항도 역시 같은 겁니다.

○**서병수 위원** 같은 내용입니까?

○**소위원장 류성걸** 예, 같은 전체 속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이것은 정부안에 들어간 것은 아니고요 의원님들 안에 있는 건데 국세감면율 한도 준수 의무화, 아까 것도 재정준칙을 해서 보통 지출 사이드에서 그런 부분을 준수하라고 그러는 건데 여기는 국세감면율도 준수하고 아예 의무화를 해 버리는 건데 국세는 성격이 좀 다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미 지금 국세감면율 같은 경우는 3년 평균 내서 그런 것들이 넘지 않도록 하라는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이면 충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지금 현재 국세감면율 관련해서는 3년 평균에다가 0.5%p를 더해서 하는 것을 한도로 되어 있는데 그 한도 계속 지키고 있습니까?

고광호 국장님, 맞나요?

○**기획재정부조세총괄정책관 고광호** 최근에는 한도를 못 지켰습니다마는 그전 굉장히 오랫동안 지켜 왔었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이것 지키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요?

○**기획재정부조세총괄정책관 고광호** 지키는 것이 좋기는 하지만 거기 검토의견에 나와 있는 대로 코로나19 같은 재난상황이라든지 경기침체라든지 이럴 때, 재정 확대가 꼭 필요할 때 이게 탄력성이 저해되는 문제가 있고요. 다른 나라들도 이렇게 한도를 법률에 규정해서 의무적으로

지키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리고 국세감면율이라는 게 어떤 추정치고 예산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의무규정으로 운영하는 게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예, 알겠습니다.

계속 계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3……

○서병수 위원 잠깐만요.

자의 류성걸 의원안에 보면 ‘다만 국세감면률 한도 초과 시 기획재정부장관은 국세감면 내역과 사유를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함’ 이 단서조항이 붙어 있다라고 한다면 특별한 때에는 국세감면율을 초과해도 되지 않나요?

○기획재정부조세총괄정책관 고광호 류성걸 의원님 이 조문은 이게 의무화를 전제로 말씀을……

○서병수 위원 그러니까 말이예요.

○기획재정부조세총괄정책관 고광호 그런데 지금도 조세지출예산서에, 예산안을 제출해서 예산안 심사 때 함께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승인 절차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 5월 달에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5월 달에 제출하는 것은 저희가 물리적으로 어렵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그 날짜는 조정하면 되지요.

○기획재정부조세총괄정책관 고광호 결국에는 9월 달에 제출을 해야 되는데 이게 감면 실적 집계하고 하는 것이니까 지금 조세지출예산서랑 사실상 큰 차이가 없다고 봐집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그 사항 포함해서 계속 계류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차항입니다. 페이지 원칙 확대 관련된 사항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억원 이것은 의원님들 발의하신 부분에 들어가 있어서요, 이것 같은 경우는 발의하신 내용 그 자체만으로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재원조달 방안 이런 것에 대해서 의무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동의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제정안이 어떻게 될지 그런 것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원칙적으로는 찬성이고, 더 명확한 관련되는 사항은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59쪽입니다.

공공부문의 재정건전성 관리 관련해서는 이게 제정안과 개정안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 관련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억원 류성걸·송언석 의원님 안은 지금 현재도 매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의 이행실적에 대해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통해 점검하고 국회에 보고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재정전략위원회에 보고하는 게 실익이 크지 않아서요 이것은 수용곤란입니다.

추경호 의원안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통해 40여 개 공공기관 부채 규모 관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외의 나머지 기관들은 규모 면으로 한 6%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는데 굉장히 작은 규모의 공공기관이어서 이것까지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기술적으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발생주의 방식, 지금 현금주의 방식인데 발생주의 방식으로 변경을 해야 되는데 현재 실적은 사후적으로 발생주의 방식으로 하지만 전망까지 발생주의 방식으로 바꾸려고 그러면 굉장히 품이 많이 들어가 가지고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수용곤란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그러면 차관님, 지금 현재 여기에 D1·D2·D3는 기재부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 것이고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도 D1에 해당이 되지만 D2 관련 통계에 있어서 그게 국제기준에, 지금 IMF나 OECD 기준에 정확하게 맞게 통계를 작성하고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재정혁신국장 나주범 저희가 D1을 주면 D2 통계는 IMF에서 자체 추정을 하거든요.

○소위원장 류성걸 우리가 IMF에다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습니까?

○기획재정부재정혁신국장 나주범 D1만 제출합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D1만 제출을 하고 D2는 IMF나 OECD에서 추계를 해 가지고 한다 이거지요?

○기획재정부재정혁신국장 나주범 예, 저희가……

○소위원장 류성걸 그러면 그것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아까 논의 도중에 국제비교를 위해서는 같은 기준으로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기획재정부재정혁신국장 나주범 저희가 결산치는 하고 있는데 아직 발생주의 방식이 도입되지 않다 보니까 D2는 아직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그러면 결국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비교 자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통계 자료에 의하면 D1과 D2의 구조적 차이가 4~5%가 나요,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재정혁신국장 나주범 예.

○소위원장 류성걸 그러면 어쨌든 D2를 발표해야 다른 나라하고 비교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50.2%라고, 내년 1068조 관련해서는 D1 기준 아닙니까? 거기에 최소 4% 또는 5% 하면 55%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전부 50.2%만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55%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통계를 여기에…… 왜냐하면 여기 추경호 의원안에서 일반정부의 부채 그리고 공공부문 부채 D3를 구분해서 하기 때문에 관련되는 내용을 이렇게 넣으려면 D1은 뭘고 D2는 뭘고 D3는 뭘냐 하는 것을 정리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규정은 없는 거지요?

○기획재정부재정혁신국장 나주범 그런 규정 없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그러니까 그것을 법에 넣으려면 그 규정을 정확하게 해야 되고.

최송합니다. 이것 기술적인 이야기라서 제가 안 드리려고 하는데요.

총지출도 사실은 전체 총지출이 아니에요. 알고 계시나요, 나 국장님?

○기획재정부재정혁신국장 나주범 예.

○소위원장 류성걸 그 총지출이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통합재정지출의 총지출이 아니에요. 알고 계시지요?

○기획재정부재정혁신국장 나주범 예.

○소위원장 류성걸 제가 그런 기술적인 이야기까지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논의를 하려면 지출에 관련되는 사항은 전부 지출만 해야 되는데 거기에 네트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총지출이 아니에요, 통합재정지출이 아닙니다.

어쨌든 관련되는 사항을 여기 추경호 의원안에 나오는 사항들 중에서 부채 D1·D2·D3에 관련되는 정의를 명확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것 관련해서는 계속 계류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입니다.

70쪽은 제정안과 개정안이 같이 돼 있기 때문에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억원 먼저 추경호 의원안은 이미 사회보험의 전망 근거가 각 부처의 개별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재정법에서 별도 규정하는 것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수용곤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류성걸·송언석 의원안 같은 경우는 결국 8대 사회보험을 관장하는 개별 부처가 동의를 해 주면 기재부가 이것을 받는 것은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조건부 수용 그다음에 추경호 의원안은 반대 그렇게 해서 나중에 종합적으로 심사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76쪽 재정개혁포상금 지급 관련 사항입니다.

물론 이것 제정안 관련되는 사항인데 이것이 개정안으로 현행 국가재정법으로 들어간다면 어떤 의견이 있는지 정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억원 만약에 이것이 들어간다면 저희들은 수용 의견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이것 나중에 개정안으로 들어간다면 수용.

그다음에는 79쪽 하향 장기재정전망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억원 장기재정전망 실시 주기는 현행 5년 주기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측면에서 저희들은 수용곤란 의견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류성걸·송언석 의원안은 5년으로 되어 있는데도 곤란입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억원 지금도 5년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중앙관서의 장은 관장하는 사회보험에 대한 장기재정전망 추계와 이에 관련된 자료를 기재부장관에게 제출’, 수용곤란이에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억원 이것도 관계 부처가 동의를 해 주면, 그리고 제정안이 이렇게 된다면 저희들은 이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이것도 관련 부처가 수용하면, 제출한다면 수용.

그다음에 82쪽 재정정보 및 통계의 공개, 별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관련 사항입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억원 이것도 개정안으로 들어온다면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위원님들 의견은요?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86쪽입니다.

재정준칙의 도입 시기에 관련되는 사항이네요.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저희는 재정준칙 도입 시기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2025회계연도 예산안 편성부터 적용되는 것이 정부 입장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이것은 계속 논의하겠습니다.

마지막 항이 되겠습니다.

92쪽 이것은 제정안이기 때문에 나중에 따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항에 대해서 정부 의견을 들었고 또 관련되는 사항을 잠정 정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 관련해서는 수석전문위원님, 제정안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언제 한번 공청회 일자를 잡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재정준칙과 재정건전화 방안에 대한 논의들이 굉장히 무성했지만 정식으로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을 광범위하게 또 더 세밀하게 수렴하는 방법이 좋을 듯합니다. 날짜 한번 잡아 주십시오.

○**정일영 위원** 위원장님, 일단 정리를 하신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해서 위원장님하고 정부 측에 물어보는데요. 이것이 지금 제정법하고 개정안하고 다 같이 섞여 있는데요, 가장 핵심은 재정준칙인 것 같은데……

차관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재정준칙에 해당되는 것 말고 정부 측에서 만약에 이렇게 한꺼번에 다 하기가 어렵다면 먼저 개정되어야 될 조문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다 이것이 재정준칙과 연관이……

○**정일영 위원** 다 재정준칙과 연결된 거예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예.

○**정일영 위원** 그러면 한꺼번에 가야 되겠네요, 결국?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예, 별도 파트를 하나 신설을 해서 거기다 다 집어넣는……

○**정일영 위원** 다 재정준칙 연결된 것들이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예.

○**정일영 위원** 그러면 제정법에 대한 공청회를 하고 나서 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소위원장 류성걸** 예, 공청회하고 또 논의를 하도록 하십시오.

○**정일영 위원** 시간이, 그러면 공청회는 언제쯤 합니까?

○**소위원장 류성걸** 시간 되는 대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당 간사님 포함해서 일정을 한번 조율을 해 보십시오.

수석전문위원께서 날짜 한번 조율해 주십시오.

○**정일영 위원** 정부 측에서는 이것이 좀 급해요, 그냥 공청회하고 천천히 이렇게 가도 되는 법이에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정부 측으로서는 좀 급한 편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결국 대외 쪽에서도 신평사라든지 이런 데서 주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은 설명한 것이 정부안을 냈다고 그런 거지 국회 통과되었다고 얘기를 한 건 아닌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쪽에서도 볼 때 우리 사회의 이 부분에 대한 관심도나 이런 것들을 보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저희는 가능하다면 빨리 이 부분은 처리를 하고 또 제정법은 제정법대로 하고 그랬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정일영 위원** 정부 측에서는 이 개정안에 대해서 먼저 보고 그리고 제정법은 공청회도 하고 이렇게 가면 좋겠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예.

○**정일영 위원** 그런데 두 법이 다 재정준칙법인데 같이 가야지 따로 가도 될 수가 있는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내용 쪽만 본다면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을 좀 반영하든지 해서 이 개정안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저희들이 보기에 차이는 저쪽은 포괄 범위를 지자체나 공공기관 거기까지도 포괄하자는 건데……

○**정일영 위원** 그러니까 개정안에 제정법에 있는 많은 것을 다 수용할 수가 있다 그 뜻이예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예, 제가 보기에 내용적으로는 제정안도 재정준칙 이 부분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는 부분이어 가지고요.

○**정일영 위원** 정부 입장에서는 하여튼 속도를 내서 빨리 처리했으면 좋겠다 그 입장이네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예, 맞습니다.

○**정일영 위원** 하여튼 이것 전문위원님이랑 또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님께도 말씀을 드리셔서 정부 측 입장대로 개정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그리고 제정법은 제정법대로 공청회를 너무 늦게 잡지 말고 바로 다음 달이 될지 어

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규정에 맞게 빨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예, 왜냐하면 공청회 관련된 사항은 제정법의 경우에는 반드시 해야 되고 개정법의 경우에는 필요하다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정법에 관련된 공청회를 하면서 재정준칙 관련된 사항도 같이 논의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서병수 위원 같이 묶어서 하면 안 됩니까?

○소위원장 류성걸 예, 같이 묶어서 할 겁니다. 공청회 관련된 사항은 일정을 좀 잡아 주시고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4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류성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5764)

6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6541)

6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6825)

6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낙연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1899)

○소위원장 류성걸 그러면 의사일정 제65항부터 제68항까지 이상 4건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연호 먼저 65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96페이지입니다.

내용은 예타 면제에 관한 사항인데요.

현행 보면 예타 면제 사유에 도로 유지보수나 노후 상수도 개량 등 기존 시설의 효율 증진을 위한 단순 개량 및 유지보수 사업도 예타를 면제할 수 있는데 개정안은 예시에 항만을 추가하자는 내용으로 그 취지는 항만 유지보수 사업도 예타 면제를 명확하게 하자는 취지로 개정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을 예시 규정으로 보면 항만도 현행

기준으로도 포함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으나 항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게 분명하다는 차원에서 개정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런 항만 유지보수 관련해 가지고 예타를 실시한 사례는 지금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이것은 단순 예시 조항인데요. 예시 조항에 항만을 넣게 되면 철도도 넣어야 되고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게 돼서요. 그리고 지금 이 항만 유지보수는 단순 개량 및 유지보수 사업인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예타가 면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행 조문을 그냥 유지하는 게 낫겠다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영 위원 정부 측 입장이 합리적인 것 같아요. 이것 다 면제시키다 보면 좀 문제가 있고, 또 총사업비 500억, 국가재정 투입 300억 원 미만인 사업은 예타가 지금 면제되고 있는 거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예.

○정일영 위원 면제되고 있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예.

○정일영 위원 저는 정부 입장 찬성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서병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수 위원 그런데 해양수산부에서 항만시설 유지보수 예비타당성 조사 제외에 대해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한 이유는 뭘까요?

○기획재정부재정관리국장 한경호 일단은 법령상 좀 명확하게 하고 싶다 이렇게 해수부 입장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서병수 위원 그런데 법령상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 이것을 암시하는 것 아니겠어요?

○기획재정부재정관리국장 한경호 제가 볼 때는 해수부가 약간 오해를 한 것이 도로·철도·항만 SOC 유형의 문제가 아니고 이 사업이 개량인지 유지보수인지 판단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사실은 그게 쟁점인데 SOC 유형을 쟁점으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상관이 없습니다, 솔직히.

○소위원장 류성걸 그래서 이 부분은 관련되는 사항들을 예시라고 되어 있으니까 예시가 아니고 가능한 것을 나열해 가지고 ‘이런 겁니다’라고 알려 주시면……

아까 정일영 위원님 말씀처럼 만약에 항만을 넣을 것 같으면 철도도 넣어야 되고 공항도 넣어야 되고 이렇게 계속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금액에 의한 예타 면제가 아니라 유지보수라는 성질에 의한 예타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안병길 의원님께도 충분히 설명을 한번 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세요.

이것은 정부안대로 하고 이것은 계속해서……

○서병수 위원 아니요,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그런데 항만이라고 하면 해양수산부라든가 정부 소유입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신항 같은 데 터미널이 이렇게 있으면 그런 큰 터미널 같은 데는 어떤 민간 회사가 소유하고 있다 또는 운영 관리하고 있다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 어떤 민간 회사가 그 유지보수에 대한 책임이 있다 이렇게 해서 정부가 유지보수에 대한 그런 지원을 안 해 주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알고 계세요, 내용을?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억원 결국은 어떤 사업이 있을 때 소요가 있을 수도 있지만 거기에 정부가, 국가가 얼마나 같이 들어가느냐, 그러면 예산 사업이 되지 않습니다. 예산 사업이 됐을 때 소유권 주체는 또 별도로 부처에서 정하는 기준이 있을 테고 예산 사업이 됐을 때 금액이 어느 정도 될 거냐 아니면 성질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예타 기준이 달라진다고 봅니다.

○서병수 위원 제 질문은 민간회사가 터미널을 소유하고 20년이면 20년, 30년이면 30년 만일에 소유하고 사용권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계속 자기들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는 민간인들이 물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예산으로 투입을 해서 유지보수를 해 줄 수 있는 건지 묻는 거예요. 그 내용을 잘 모르시지요?

○기획재정부재정관리국장 한경호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억원 말씀하신 BTL이나 BTO 같은 것 할 때 유지보수에 관련된 부분 같은 경우는 정부가 해 줘야 되는지 자기들이……

○서병수 위원 그 내용을 잘 모르시는구나. BTL·BTO가 아니고 만들어진 항만 자체를 민간회사가 그것을 일정 기간 동안 운영권을 가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면 민간회사들이 그것을 사용하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마모도 되고 부서지기도 하고 할 것 아니에요. 그런 데 대한 유지보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부 예산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민간회사들이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기획재정부재정관리국장 한경호 제가 알기로는 단순 개량이나 유지보수는 민자사업자가 하는 데요. 그것을 넘어설 때는 어떻게 하는지를 제가 한번 알아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65항은 계속 계류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6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연호 자료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논의하고 있는 예타 면제 사유 중에 국가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업은 예타 면제 대상인데 이 사업의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업내역과 사유를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개정안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의 경우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의견은 최근에 국가 정책적 추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예타 면제 사업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이러한 사업이 무분별하게 추진되는 것을 조금 제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점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 되겠습니다.

다만 고려할 사항으로는 재난 예방을 위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현재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는 점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02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국회 상임위 동의를 받도록 할 경우에는 반대로 긴급하게 추진이 필요한 사업이 적기에 추진이 못 될 가능성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회가 타당성제조사를 요구할 수 있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한 국회의 통제가 현재도 국가재정법 제50조에 따라 가능한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최근에 국가재정법의 개정으로 예타 면제를 방지하는 장치를 마련한 점도 참

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예타를 통과하지 못한 사업은 연계사업의 시행, 해당 사업과 관련된 경제·사회 여건 변동 이런 제한을 두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억원 현재도 예타 면제 사업은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그 내역과 사유를 상임위와 예결위에 보고를 하고 있고요. 국회에서도 예타나 타당성재조사 요구 관련 권한 등을 갖고 계신 측면이 있어서 이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긴급하게 할 필요성 이런 것들을 볼 때는 행정부의 예산 편성 과정에 있는 절차로 봐 주시고, 그다음에 궁극적으로는 예산 심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통제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수용곤란 의견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수 위원 정부 측에서 이야기하는 ‘국회 등의 통제 장치가 이미 마련되어 있고’라고 하는 이 말이 방금 차관께서 말씀하신 예산심의 때 통제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억원 아닙니다. 그것 외에도 일단 상임위랑 예결위 보고 제도가 있고요.

○서병수 위원 상임위에 무슨 예타…… 정부가 정책적으로 결정하는 어떤 사업들에 관해 가지고 상임위에서 심의하고 의결하고 하는 이런 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억원 이것은 결과에 대한 보고가 되겠고요. 그래서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국회가 의결로 계속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재조사를 요구할 경우에는 타당성재조사를 실시해야 되고 또 국회에 결과를 보고해야 되는 의무가 국가재정법 50조 3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서병수 위원 보고를 했을 경우에 국회가 알면 그렇지만 자동으로 국가가 정책적으로 결정하는 어떤 예타 면제 사업에 관해 가지고 국회에다가 보고를 하고 그러면 국회에서 그것을 재검토해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하라든지 하지 말라든지 이렇게 할 권한이 지금 현재도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억원 예.

○서병수 위원 확실히? 나는 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을까.

○기획재정부타당성심사과장 이지원 타당성심사과장 이지원입니다.

국가재정법 제38조 4항에 따라서 기재부장관은 국회가 의결로 요구하시면 예타를 실시해야 되는 의무가 있고요. 국가재정법 50조 3항에 따라서 계속사업에 대해서도 타재를 실시해야 합니다.

○서병수 위원 아니, 정부가 예타 면제 사업이라고 결정한 사업에 관해서 국회에 따로 보내 가지고 심의를 거쳐 가지고 예타를 재조사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기획재정부타당성심사과장 이지원 저희가 예타가 면제된 사업도 결국은 기본적으로는 예산에 반영돼서 국회에 제출이 되고요.

○서병수 위원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렇겠네.

○기획재정부타당성심사과장 이지원 아닙니다. 그것은 1차적으로 예산에 반영이 되면서 면제 사업 내역에 대해서 저희가 제출을 합니다. 그리고 예타가 국가 정책적으로 면제될 경우에는 상임위에 별도로 주무부처가 공문을 일단 보내고요. 그러고 와서 각 소관 상임위에 보고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예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국회의 의결로 예타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서병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국회라고 하는 것은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돼요.

○기획재정부타당성심사과장 이지원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는 본회의를 거친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이야기예요, 이제까지 한 번도 없었을뿐더러. 그런데 여기는 상임위 동의를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국회에 보고해야 된다면 당연히 국회 전체 본회의에 보고하는 형태가 되면서 사실상 국회의원들한테 관련되는 자료를 전부 다 이메일이라든지 이렇게 보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소관 상임위 동의를 하도록 하는 데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국회 본회의에 하기 때문에 그것은 이미 하고 있다, 그러니까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기획재정부타당성심사과장 이지원 아까 차관

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예타는 예산편성을 위한 기초자료입니다. 그래서 최종 심사 확정권은 국회에서 가지시게 되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여쭙보신 게……

○서병수 위원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 정부가 예비타당성 면제를 했잖아요. 이 법안은 그 사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국회 소관 상임위에 제출을 해 가지고 동의를 얻어라 이 말이야.

○기획재정부태정관리국장 이지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10호 같은 경우는 긴급한 경제·사회적 대응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대응 같은 그런 긴급한 상황을 위해서 면제한 경우가 많았는데요. 그 시급한 상황을 위해서 면제하는 경우에 국회 상임위 동의를 얻기까지는 적시 대응이 굉장히 힘들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 예방 같은 경우 상임위 동의 규정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 경우는 재난 예방입니다. 그래서 재난복구같이 시급한 조항은 상임위 동의 규정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별도로. 그 점을 같이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병수 위원 이 법안의 내용 자체가, 그것을 묻는 거예요. 정부가 지금 이 사업은 면제를 하겠다라고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그 사업을 모조리 상임위로 보내 가지고 국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라 이 말이에요, 지금.

○기획재정부태정관리국장 한경호 제가 조금 보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면제 사업의 소관 상임위 사전 동의 여부에 따라 사업의 존폐가 결정되지 않습니까, 만약 그것이 의무화됐다고 가정하면. 그런데 지금 예타 면제된 사업이 예산심의 과정에 들어가서 상임위에서 전액 감액을 해 버리면 똑같은 효과가 나옵니다. 국회에서는 100% 통제 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서병수 위원 자꾸 다른 말씀 하시지 말고.

여기 보면 ‘국가 정책적 사업 예타 면제’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여태까지는 그런 예타 면제 사업이 있다면 상임위에 보고만 하면 됐는데 지금 개정안 내용은 뭔가 하면 반드시 국회 소관 상임위의 동의를 얻어서 해라 이 말 아니에요.

○기획재정부태정관리국장 한경호 예, 맞습니다.

○서병수 위원 거기에 대해서……

○기획재정부태정관리국장 한경호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국회에서 통제 장치가 예산심의 과정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심의 과정에서 저희를 잘라버리면……

○서병수 위원 그래서 이런 게 필요 없다 이 말 이네.

○기획재정부태정관리국장 한경호 면제한 것도 잘라 버리면 사라지게 할 수 있다는 말씀 드렸고요.

아까 ‘국회가 의결로’ 이 말씀 하셨는데 어차피 국회 의결하는 게 많은 경우에 대부분이 상임위 결정을 거쳐 올라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타 면제 사업이 기재부에 있는데 기재 상임위에서 이 사업 전액 감액이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마지막에 국회 본회의 의결이 나면 그것도 끝나는 효과가 나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국회에서는 예타 면제 사업의 통제 장치가 있습니다.

○서병수 위원 물론 예산심의할 때는 그런데, 그럴 수는 있지만 법안의 개정 내용은 정부가 하는 모든 예타 사업에 대해서 상임위 동의를 얻으라는 거거든요.

○기획재정부태정관리국장 한경호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계속 설명을 드렸지만 절차적으로 너무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 말씀드린 게 예타는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저희들의 내부 과정인데 그걸 동의를 받아 버리면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다시 국회로 갔을 경우에 또 거기 좀 이상한 그런, 절차적으로 약간 모순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정일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일영 위원 현행 규정이 소관 상임위 보고라서 국토부면 국토부, 복지부는 복지부 쪽으로 하고 기재위는 별로 사업이 없으니까 보고가 없었나 보네요, 그동안 없었던 것 같고.

현행 조문부터 보면 50조의 4항에 있는 타당성 재조사를 국회가 의결로 요구한 경우, 그 의결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한 본회의의 의결을 얘기한다고 그랬지요?

○기획재정부태정관리국장 한경호 ……

○정일영 위원 대답을 해요.

○기획재정부태정관리국장 한경호 예, 맞습니다.

○정일영 위원 본회의 의결로 이것이 몇 번 있

었습니까? 본회의의 이런 의결이 최근 한 3년 동안?

○**기획재정부재정관리국장 한경호**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일영 위원** 없지요?

○**기획재정부재정관리국장 한경호** 예.

○**정일영 위원** 이것을 본회의에서 의결하기는……

○**기획재정부재정관리국장 한경호** 위원님들이 상임위에서 논의해서 가지고 이렇게 올리면 사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일영 위원** 뭐를 다시 반영해요? 근데 이것이 설명이 좀 이상하긴 해요. 왜냐하면 뭐 예산 심의에서 자를 건 자르면 되니까 똑같은 효과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사실 면제받아 가지고 이미 예산편성돼 가지고 올라왔는데 그것을 다시 예산 심의하면서 자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좀 안 맞는 것 같고, 똑같은 효과는 아니에요.

똑같은 효과는 아닌데 이 조문을 넣었을 때 필요성도 인정은 되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싫겠지요. 예타 면제하는 사업을 그때마다 소관 상임위 동의를 받으려면 힘드니까, 절차도 귀찮고, 솔직히 싫지.

그런데 상임위가 한 두 달에 한 번은 열릴 텐데 이런 국가 정책적 사업 중에 예타 면제받는 것들이 1년에 몇 건이나 돼요?

○**기획재정부타당성심사과장 이지원** 올해 같은 경우는 11월까지 27건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 정책적 면제는 3건이었습시다.

○**정일영 위원** 그렇지요?

○**기획재정부타당성심사과장 이지원** 예.

○**정일영 위원** 그것을 물어보는 건데, 국가 정책적 사업 3건은 어떤 사업들이에요?

○**기획재정부타당성심사과장 이지원** 대전의료원 설립 사업과 서부산의료원 설립 사업 그리고 청년월세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일영 위원** 세 번째가 뭐라고요?

○**기획재정부타당성심사과장 이지원** 청년월세지원 사업입니다.

○**정일영 위원** 청년월세지원 사업? 그게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 건데요, 사업비가?

○**기획재정부타당성심사과장 이지원** 0.3조 원입니다.

○**정일영 위원** 3000억?

○**기획재정부타당성심사과장 이지원** 3000억입니다.

○**정일영 위원** 그게 국가 정책적 사업으로 해 가지고 예타 면제받아서 지금 내년 예산에 들어가 있어요?

○**기획재정부타당성심사과장 이지원** 예, 예산에 반영되어 있고 예결위에서 한창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일영 위원** 그 3건의 경우를 보면 사실은 상임위 동의를 받는 게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은데, 다만 행정부에서 하는 것을 국회 상임위에서 그때그때 동의를 받도록 한다 하는 게 그런 예가 많지는 않은 것 같네요.

하여튼 더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그래서 더 논의를 하긴 하되 이 부분이…… 왜냐하면 예비타당성조사가 예산편성의 제일 처음 단계에서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중요하지만 예타제도의 근간을 흔들 정도로, 근본을 흔들 정도로 예타면제 사업이 많은 거예요. 이게 정책적 사업이라고 해서 국무회의 의결 거치고 이래저래 해 가지고 없애고 이것 빼고 저것 빼고 이렇게 해 버리면 너무 많이 되니까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면제하는 것을 보고받고 그중에서 일정 규모 이상에 대해서는 이것은 예비타당성조사를 해야 되겠다 하는 정도의 큰 규모의 사업이라면 예타를 면제하는 사항에 대해서 국회 상임위의 승인·동의를 받도록 하자 이런 취지 아닙니까, 맞지요?

○**기획재정부재정관리국장 한경호** 예.

○**소위원장 류성걸** 그렇게 본다면…… 지금 예타가 완전히 흔들흔들하고 있어요, 이빨 흔들리듯이. 그래서 그런 부분의 문제점을 치유하는, 문제점을 해소하는 그런 방안 중의 한 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처럼 예타…… 정책적으로 해 가지고 막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듣고 또 추가적인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좀 듣고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계류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연호** 다음 67·68항 되겠습니다.

자료 111페이지를 먼저 보시면 기금 자산운용 지침에 ESG 관련 사항 포함 의무화와 기금운용 평가 항목을 법률로 명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12페이지 보시면 국가재정법상의 기금자산운

용원칙이 있습니다. 현행 원칙은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등이 되겠는데 개정안은 이 운용원칙에 투자 대상 관련 ESG 등 요소를 고려하여 운용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자산운용지침에 포함할 사항을 지금은 투자 기준·절차 그다음에 투자자산별 배분, 실적 평가 공시 등이 돼 있는데 여기에 투자 대상 관련 ESG 등의 고려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의견은 개정안에 따라 공적기금의 ESG 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겠고 둘째, 투자자가 다수의 국민에 해당하고 투자 기간이 장기인 경우 단순히 기업의 재무적 성과만을 고려한 투자 의사결정은 적절하지 않다는 인식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항들을 반영할 수 있어서 개정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다만 고려할 사항으로 현행 원칙에 공공성 원칙이 있는데 이 공공성 원칙에 ESG 투자 원칙이 포함될 가능성은 없는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고, 둘째는 아직까지 투자 대상 기업의 ESG 등 요소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관련 전문 인력도 부족한 상황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료 116페이지 보시면 기금운용 평가 항목에 앞에 말씀드린 그러한 요소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ESG 도입을 위해서는 필요성이 있겠습니다만 다만 지금 기금 자산운용의 원칙 및 자산운용지침의 준수 여부 등은 매년 초 기금관리주체에 통보되는 기금운용평가지침과 기금준치평가지침에 이러한 사항들이 전부 다는 아닙니다만 일부 포함됐다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공적 기금이 자산운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반영하는 것은 중요하고요 저희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형식을 여기서 처럼 법률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규정하거나 강제하는 것보다는 각 기금의 특성, 자율성들이 있기 때문에 보장하는 차원에서……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 평가라든지 자산운용지침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

요.

그다음에 지금 사업성 기금들이 전체 한 67개가 되고 있는데 거기서 48개 같은 경우는 규모도 작고 단기 잠깐 미스매치 나는 그런 부분들을 운용하는 것들이 있어서, ESG는 사실 중장기적인 투자 측면이 있어서, 그런 때 같은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적용될 때 약간 경직적인 운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탄력적으로 지침을 통해서 운용하는 게 낫겠다 하는 게 저희 입장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다음은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영 위원 ESG가 요즘 굉장히 떠오르는 화두고 또 중요하지요.

그런데 정부 측에서 설명한 것처럼 지침이라든가 운용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굳이 법률에까지 규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합니다.

○서병수 위원 저도요,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좋습니다.

이 사항은 계속 계류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다음 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연호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채권 관리법상의 국가채권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 규정은 국가채권법에 의해서 채권 면제를 할 수 있는 사항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첫째가 채권관리관이 이행연기특약을 한 채권과 두 번째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외국 또는 국제기구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에 대해서인데 우측 개정안의 1호는 현행과 같은 내용이고.

122페이지 보시면 두 가지 사유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당한 공권력 행사 등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국가의 과오지급 등으로 발생한 환수금 등 부당이득반환채권에 대해서 면제를 하려는 내용으로 대표적 사건으로 인혁당 재심 사건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3호에 나오는 두 번째 사유는 채무자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행사 과정—예를 들면 노동권의 단체행동권이 되겠습니다—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한 국가의 손해배상채권에 대하여 발생원인 등을 고려할 때 그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국민의 기본권 행사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런 두 가지 사유를 추가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의견은 개정 필요성을 먼저 살펴보면 채무자인 국민의 적극적인 피해 구제와 보호가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국가의 과오지급 등으로 발생한 환수금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있겠는데 이렇게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는 피해 구제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본권 행사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도 면제를 하여 적극적인 기본권 행사를 보장할 수 있지 않나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국가채권 전반에 대한 기본법에 채권 면제에 관한 사항을 직접 추가함으로써 신속 구제가 가능하다는 필요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반면에 고려할 사항으로는 개별 채권의 성격에 따라 개별법에서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될 수가 있습니다. 국가채권 관리법은 국가채권의 관리를 위한 일반법으로 개별 채권의 특성을 감안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개별 채권법 특성에 따른 감면, 면제 등은 각 개별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이런 내용이 되겠고.

그다음에—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국가배상금의 과오지급으로 인한 환수금 등의 면제 여부에 관한 사항은 국가손해배상제도의 정책적 사항이므로 이 법보다는 국가배상법에서 규정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개별법에서 채권 면제를 하는 그런 조문들을 참고자료 2에서 제시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개정안의 채권 면제 요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개정안에는 채권 면제 요건이 국가의 진정한 인권침해 사과 및 피해자 구제 책무에 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으로 규정돼 있는데 이런 요건들이 좀 불명확하지 않나 이런 의견입니다.

그다음 123페이지를 보시면 개정안에서는 적용례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데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채무를 이행한 자와의 형평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해당 사건이 있는 이슈인데요 반환금의 원금까지 면제하는 입법은 형평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피해자 구제라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관계 부처 간에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체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대안 조문을 마련했는데요. 129페이지랑 130페이지 보시면 이게 정부 수정의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 수정의견으로 했으면 하는 게 정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오늘 이 사항 때문에 관계 부처에서 참석을 하고 있으니까요 추가적인 질의 사항은 질문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어느 분이 참석하셨어요? 어느 분이 참석하셨는지 확인 좀…… 어디서 오셨어요?

○법무부송무심의관 김의래 법무부 송무심의관 김의래입니다.

○국가정보원준법심의관 000 국정원 준법심의관 000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그래요, 조금 이따가 질의하면 답변해 주시고요.

정일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일영 위원 이게 좀 내용이 복잡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시간도 많이 걸렸던 사건도 있었고 그런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시간을 많이 끌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제 질의는 국정원하고 법무부에서 오신 분들께, 국정원부터……

여기 정부 측 의견대로 원금 면제까지 해 주는 건 좀 문제가 있으니까 피해자 구제 차원에서 연체금에 대해 면제하는 대안, 정부 측 수정안대로 하면 국정원 이의 없어요?

○국가정보원준법심의관 000 예, 없습니다.

○정일영 위원 법무부도?

○법무부송무심의관 김의래 없습니다.

○정일영 위원 그러면 저는 수정안에 찬성입니다. 수정안대로 의결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다른 의견 없습니까?

○서병수 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또는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런 국가채무에 관해 가지고 면제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들은 없나요? 무슨 위원회를 구성을 한다든가……

○**법무부송무심의관 김의래** 법무부 송무심의관 김의래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지금 법원 판결에 의해서 확정된 채권이기 때문에 국가채권 관리법의 규정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규정 없이 이것을 해결하는 것은 오히려 굉장히 큰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그래서 지금 개정안 또 정부의 수정안도 그렇고 한 가지 여쭙볼게요.

이게 지금 국가채권 관리법, 일반법인에 사실은 개별 사안을 상정하고 거꾸로 그 사항에 대해서 적용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 법이 지금 개정돼서 만약에 시행이 된다면 딱 원 포인트의 개정 법률안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기획재정부국고국장 유형철** 기재부 국고국 유형철 국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안 자체는 개별적인 사안, 저희가 어떤 하나의 사안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그런 법률로 개정하는 걸로 비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이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기본권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좀 더 그 부분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법으로 만들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국장님, 지금 기본권 이야기 하지 마시고요. 지금 이 사안이 발생을 한 거예요. 기본권이, 앞에는 그렇게 했는데, 사안이 발생한 걸 사후에 치유하기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한 원 포인트…… 지금 쌍용자동차하고 인혁당 재건위 사건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딱 원 포인트 법 개정이에요.

제가 이야기드리는 것은 인권, 어떤 기본권 그런 부분들은 다 과거의 일이고 지금 이 법을 개정하는 국회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 이것 사실은 청부입법이에요. 맞습니까?

○**기획재정부국고국장 유형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소위원장 류성걸**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쭙보는 거예요. 이거 청부입법이에요. 맞아요?

○**기획재정부국고국장 유형철**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쌍용차 같은 경우는……

○**소위원장 류성걸** 그러면 왜 단독 개별 사안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법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이런 사항을 규제한다든지 또는 이런이런 사항에 대해서 관련되는 사항을 그렇게 유도한다든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만들어야 되는 게 법이에요. 그런데 지금 목적을 가지고 딱 한 건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재정부국고국장 유형철** 위원님, 저희가 지금 쌍용차 같은 경우는 수용곤란으로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소위원장 류성걸** 그러면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 대해서는요?

○**기획재정부국고국장 유형철** 이 경우는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부분이 이슈가 돼 왔고……

○**소위원장 류성걸** 그것은 뭐냐 하면 법원 판결이…… 대법원 판결을 보십시오. 판결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당초에 가지급금 해 갖고 하라고 했을 때에 그 대법원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사항이에요. 그런데 중간에 다 지급해 갖고, 가지급금 다 해 갖고 했는데 최종 판결에서 대법원이 판결을, 이제까지 유지했던 기준을 바꿨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솔직히 이야기해서 여기 가져올 게 아니라 대법원에서 알아서 하시라고 해야 돼요. 지금 뒤에 AS 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이요.

○**기획재정부국고국장 유형철** 위원님……

○**소위원장 류성걸**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개별 AS 하는 법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기획재정부국고국장 유형철** 위원님, 이 사항 관련해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대법원 판결이라든지 그 부분에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떠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 이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사람들의 어떤 이익이라든지 그런 면에 대해서는 개인의 과오가 아니기 때문에……

○**소위원장 류성걸** 국장님,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 그 사항에 대한 것은, 예를 들어서 관련돼서 기본권을 하는 부분들은 그때 당시의 이야기고 지금은 이게 최종적으로 그 사건 하나를 위해서 만든 법 아니겠어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익원** 위원장님, 법이라는 게 결국 일반화해서 잡는 게 법인 거고요. 양

해해 주신다면 특별히 법무부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설명해 보세요.

○법무부송무심의관 김의래 법무부 송무심의관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어찌됐든 할 때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입법에 대한 필요성 때문에 아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거였던 것은 맞고요. 다만 이 법은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기재부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특정 어떤 사건에 대한 그게 아니고요. 일반 요건에 대해서, 사실 지금 있는 국가채권 관리법의 범위 내에서, 그런데 실제로 거기서 보면 지금 현재도 지연배상금에 대해서 이것을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현재 이 규정으로는 실제로 이 규정이 작동할 수가 없게 되는 약간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맞춰서 하는 부분이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특히 정부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앞으로도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채무자 입장, 채무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자신의 책임 없이 발생한 어떤 채무에 대해서, 원본 채무가 아니라 지연배상금에 대해서는 소위 말해서 어떻게 보면 좀 감면해 주면서 오히려 원본 채무를 좀 더 신속하게 갚을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열어 주는 그런 보완적인 법이기 때문에 사실 조금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특별한 어떤 사건을 위한 특정한 법은 아니라고 일단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요. 이것은 전부 다 대법원 그리고 국정원, 법무부의 모든 것을 말아서 국회에다가 던진 거예요. 국회가 지금 이것을 처리해 주기를 전부 다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법원이 해결해야 될 일을 또 집행청인 국정원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형태든지…… 예를 들어서 국정원이 전부 다 받아냈으면 문제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인원 수가 몇 명이었지요?

○국가정보원준법심의관 000 76명이었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76명 중에 38명은…… 숫자가 있지요?

○기획재정부국고국장 유형철 예, 이미 납부했

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관련되는 사항을 전부 다 이렇게 따왔더라면 이 법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국가정보원준법심의관 000 위원장님.

○소위원장 류성걸 그러니까 제가 여쭙보는 거예요. 만약에 모든 분들이 다 반환을 했더라면 이 법이 필요해요, 없어요?

○국가정보원준법심의관 000 계기가 된 것은 맞지만 앞으로……

○소위원장 류성걸 잠깐만요. 모든 분들이 전부 다 자기가 받았던 것을, 본래 기준보다도 많이 받았던 분은 전부 다 반환했으면 이 법이 필요해요, 안 해요?

○국가정보원준법심의관 000 이 사건하고 관련 없이……

○소위원장 류성걸 잠깐만, 돌리지 말고요. 이게 지금 속기가 다 되어 있고 영원히 남는 기록이에요.

○국가정보원준법심의관 000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그러니까 만약에 국정원이 열심히 노력해서 그 대상자들로부터 모든 것을 다 받아냈더라면 이 법이 필요해요, 없어요?

○국가정보원준법심의관 000 위원장님, 저희는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현실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소위원장 류성걸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을 하세요. 만약에 국정원에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모든 걸 다 받아냈으면 이 법이 필요해요, 없어요?

○국가정보원준법심의관 000 그러더라도 이 법은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왜 필요해요?

○국가정보원준법심의관 000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안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일 처음에 김정협 의원이 발의한 법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특정 사건을 염두에 두고 그걸 위원장님 말씀대로 다 받아냈으면 필요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수정안은 인혁당 재건 위 사건이 계기가 된 건 맞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분들한테 원금을 다 받아내서…… 32조가 원래 있습니다. 원래 있고, 일부 면제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시행령에 세 가지가 규정돼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고의·중과

실이 없는 경우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원금을 갚는다 했을 때 면제를 해 주려고 보니까 즉 비용, 이자, 원금 총당 순서로 해 갖고 일시적으로 내지 않는 경우가 아니면 이 조항의 실효성이 매우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총당 순서에 대해서 좀 완화를 해서 32조의 실효성을 더 높이자는 것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예, 알겠습니다.

○국가정보원준법심의관 000 물론 이 건 계기가 됐지만 다른 사건이 또 된다면 그 상황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모든 걸 다 면제해 주는 건 아닙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첫 번째, 이 법률 개정안이 됐던 최초의 원인은 대법원에서 판결의 기준을 당초에 지연손해금 발생시점, 불법행위 발생시점에서 사실심 변론 종결일로 변경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맞습니까?

○국가정보원준법심의관 000 예.

○소위원장 류성걸 그러니까 결국은 그때 당시에 계속 유지를 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아예 생기지를 않는 거예요.

두 번째,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체 76명의 채무자 중에서 38명이 채무 이행을 했고 결국은 반환금을 반환을 했어요. 35명에 대해서는 강제집행해서 일부 완료했다는데, 몇 명 완료했습니까?

○국가정보원준법심의관 000 11명 정도 완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그러면 이 35명에 대한 강제집행 계속할 겁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강제집행을 한…… 조금 이따가 이야기할게요.

그다음에 3명은 지금 국정원 강제집행 절차에 대해서 청구이의 소제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분들 중에서 반환금을 반환했던 분들하고 또 지금 현재 강제집행이 집행 중이고 이미 집행을 했던 분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해서 반대 또는 못 하는 경우하고, 그다음에 3명하고 전부다 차이가 있을 거예요. 형평성 관련 문제도 있을 겁니다.

○국가정보원준법심의관 000 위원장님, 세 경우를 나눠서 말씀을 좀 올려도 되겠습니까?

○소위원장 류성걸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역사에 기록을 해야 돼요.

지금 보면 법원과 또 국정원 또 법무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부 다 관련되는 사항을 이렇게 모아 갖고 최종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법에 의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지금 법을 이렇게 제안을 했던 걸로 기억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이것을 논의한다는 게 결국 역사적으로 봐서도 개별 사안에 대해서 사후 AS 형태의 법을 지금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처음에 논의할 때 만약에 이걸 하게 되면 전부 공범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부분에 관련되는 사항을 굉장히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돼요. 1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들 여기서 법 처리하면 법으로 되겠지요. 그런데 이 개별 입법에 관련되는 사항을, 이게 앞으로 이렇게 된다면 우리 기재위에 다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관련되는 사항을 앞으로 또 이렇게 하면 과거에 이런 것 해 줬으니까 해 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어요.

설명하십시오.

○국가정보원준법심의관 000 첫째,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38명 일부 이행을 판결이 나자마자 일부 변경된 기준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속된 말로 토해 냈지요. 토해 내신 분들은 그 즉시 토해 내서 거의 이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원금을 토해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 일부 변제한 사람들도 재산이 없기 때문에 거의 텅없이 미치지 못하고요. 그 부분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리고 지금 안 내신 분들, 세 부류입니다. 우리 국정원에서 말한 3명도 그 세 부류에 속한 사람들인데 못 내고 있는 사람들도 원금을 면제해 주는 게 아니라 지연이자 이 부분만 면제를 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에 따른 첫 번째 38명 이행한 사람들하고 형평성 차이는 거의 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이게 계기가 돼서 앞으로 다른 사건에 있어서도 또 이렇게 해 주자 이렇게 된다는 걸 염려하시는 부분은 심분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원금을 일부 면제해 준 규정이 32조에 이미 있었고, 다만 그걸 일시적으로 모든 원금을 마련해 올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효성을 높이게 이렇게 바꿔 놓으면 다른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이 규정에 따라서 고의·과실이 아닌 경우에 면제해 줄 수 있는 경우는 면제하지 또 법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이 조항에 의해서, 인혁당 사건이 계기는 됐지만 다른 사건에 있어서도 자기 고의·과실에 의하지 않고 이런 사건이 됐을 때 그 원금을 갚겠다고 할 경우에 그걸 또 일시적으로 갚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런 경우가 현실적으로 매우 힘들기 때문에 좀 분할을 한다든지 아니면 수정안처럼 5년 내로 기한을 둔다든지 이렇게 하는 경우가 되면 형평성이나 이런 문제, 그다음에 향후 다른 사건에 있어서도 법을 또 개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은 오지 않을 걸로 판단됩니다.

○소위원장 류성길 법무부에서 오신 분 누구시라고요?

○법무부송무심의관 김의래 송무심의관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길 법무부의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법무부송무심의관 김의래 지금 사실 저희가 같은 입장이고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국가채권 관리법의 큰 기조를 흔들지 않으면서 이 법이 앞으로 더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원래 당초 김경협 의원님께서 제시했던 법안도 나름 의미는 있고 그렇지만 그 부분은 입법정책의 문제고 또 정부 간의 어떤 협의를 통해서 그 부분까지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형평성의 문제, 그런 문제로 인해서 일단은 저희 안에서는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현재 어떤 법 테두리 내에서 이걸 과연 어떻게…… 실제로 보면 지금 형평성의 문제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차이, 문제는 아니고 오히려 자기의 원금보다도 거의 2배 이상의 지연배상금이 생기는 그런 불합리한 상황에……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불합리한 상황이 됐는데요.

○소위원장 류성길 누구시라고요? 심의관이라고 하셨어요?

○법무부송무심의관 김의래 송무심의관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길 그런데 예를 들어서 투자해 갖고 그 돈이, 금액이 당시의 1억만금의 돈으로 투자를 해서 100원이 될 수도 있고 10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그 관련되는 사항을 할 것 같으면 이게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 위원님들이 참석하시면서 의견으로 최종적으로 처리를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오늘 여기 저를 포함해서 지금 세 분이 계신데요.

말씀하십시오, 양경숙 위원님.

○양경숙 위원 지금 법안을 제출한 부분의 문제점이라고 인식하는 것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짚어 주시고요. 구체적인 대안, 대책을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국가정보원준법심의관 000 국정원 준법심의관입니다.

시간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저희는 김경협 의원이 냈던 안처럼 저희가 과거에 잘못된 사건도 있었고, 저희가 가혹 행위라든지 이런 게 계기가 돼서, 그리고 국가배상 액수를 정하는 과정에서 이자 계산 시점을 60년대나 70년대 중정 시절이 아닌 사실심 변론 종결 시로 이렇게 바꾸면서 다시 토해 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 계기가 됐기 때문에…… 저희는 원래는 원금마저 다 면제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경협 의원안에 대해서도 찬성 의견을 냈고요.

그러나 법무부하고 기재부하고 이렇게 회의를 거치고 하면서 국가채권법의 근간을 흔들지 않고, 특정인을 위한 형평성 논란을 없애고 이르기 위해서는 이미 있는 연체금 면제 조항이 있다, 그 조항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충당 순서라든지 분할납부 이 정도를 해 주면 된다. 즉 원금은 반드시 회수해야 된다, 그래야 형평성 논란도 안 생기고 이렇다 이래서 저희들은 저희 원래 입장에서 양보를 해서 기재부와 법무부 입장에 찬성을 하고, 이 안에 따르면…… 물론 이렇게 했다 해서 그분들이 원금을 갚지 못하면 상황은 변동되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이분들 중에 어떻게라도 마련해서 원금을 갚겠다 하면 그 부분은 32조 원래 취지에 따라서 충당 순서나 분할납부 정도를 해 주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수 있는 면이 있다는 겁니다.

○양경숙 위원 저는 그 해결을 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국가가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분명하게 잘못된 부분은 시인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것은 분명하잖아요?

○국가정보원준법심의관 000 예.

○양경숙 위원 그것은 시인을 하시고 대안을 마련해서 위원들한테 한번 제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부 측의 구체적인 법안의 대안을.

○국가정보원준법심의관 000 대안을 제출했습니다, 위원님.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게……

○양경숙 위원 아, 그런가요? 제가 그걸 못 봤

습니다.

○**국가정보원준법심의관 000** 마지막에 있는 안이 이자의 비용…… 대안을 저희 정부가 단일해서 협의 끝에 제출한 게 그 대안입니다. 그것은 원금은 반드시 갚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5년 내입니다. 무한정 기간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때 못 갚으면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송을 수행하면서 법정에서 판사가 이것을 중지시켜 놓으면서 여러 가지 해결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라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이자를 20% 지연이자를 내거나 몇 % 내는 것은 국민들이나 누가 봐도 그렇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사정에 의해서건 이자를 원금의 2배, 3배 낸다는 것은 아무리 봐도 좀 그렇지 않느냐, 오히려 국가가 이자 놀이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리고 지연이자 제도의 취지가 ‘원금을 잘 내고 빨리 내라.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큰 이자가 붙으니 빨리 내라’ 이런 취지지 특별히 벌 주려는 이런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 기관에서도,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경숙 위원** 본 위원은 정부 측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이 부분은 나중에 소위 위원님들이 모두 참석한 상황에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정원 그리고 법무부에서 오신 두 분,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위원님들 하실 말씀 있습니까?

그러면 기재부는 수정한 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억원** 기재부도 관계 부처랑 협의해서 만든 안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이 부분은 나중에 소위 위원님들이 모두 참석한 상황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숙 위원** 왜 모두 참석한 상황에서 해야 됩니까? 다른 데는 과반수 이상 참석에 과반수 이상 의결로 소위의 의견도 채택을 했는데 왜 모든 위원이 다 참석해야 된다는 것을 전제하시지요?

○**소위원장 류성걸** 업무에 관련돼서 의결할 사항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들

어 보자는 뜻입니다. 모든 위원님들 의견을 전부 다 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의결할 때에……

○**양경숙 위원** 아니, 그러면 모든 법안 전체를…… 그것은 위원장님 개인의 생각이시고요. 위원장님이 그렇게 독단적으로 운영하시는 것은 좀 자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의결을 하는 것은 의결정족수에 따라서 하되 모든 위원님들의,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양경숙 위원** 모두 다 중요한 법안이고, 중요한 사안 아닌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이것만 이렇게 특별하게 중요하다고 위원장님만 생각하시는 거지요?

○**소위원장 류성걸**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오셨을 때 의견을 들어 보겠다는 말씀입니다.

○**서병수 위원** 위원장 이야기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할 것 없잖아요. 지금 의결정족수도 되지 않고 하니까……

○**양경숙 위원** 아니요, 저는 특별하게 사건을 과도하게 많이 반영하고 계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그래요, 그것은 뭐 판단하시고요.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연호** 자료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국조폐공사법이 되겠는데, 이 법의 목적과 조폐공사의 업무 범위에 ‘공직선거 투표용지 제조’ 사항을 추가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32페이지 보시면 개정 내용에 이 법의 목적에 있어 가지고 ‘특수제품의 제조’가 있는데 투표용지 등을 예시를 하고 그다음에 아랫부분의 조폐공사의 업무 범위에 ‘유가증권 및 공직선거 투표용지의 제조’로 공직선거 투표용지의 제조를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투표용지에 위·변조 방지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투표용지의 위·변조 방지 및 선거의 신뢰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입법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현행 공직선거 투표용지에는 별다른 위조 방지 기술이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폐공사는 화폐뿐만 아니라 상품권이라든지 이런 등에 위·변조 방지 기술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시에 고려할 사항으로 조폐공사가 다양한 투표용지를 한정된 시간 내에 인쇄하는 것이 가능한지, 투표용지가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고 그다음에 선거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참고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133페이지 보시면 공직선거법의 개정이 선행될 필요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합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투표용지를 선관위가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정안 취지대로 개정할 경우에도 개정 내용 중에 목적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자료 136페이지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추가재정 소요가 선거 때마다 좀 다르지만 23억, 11억 그다음에 82억 정도 소요된다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137페이지는 투표용지의 종류, 그다음에 참고 4·5는 위·변조 방지 기술 등을 게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현행 조폐공사법에 따르면 공사의 업무 범위에 이미 특수용지·특수인쇄물 등의 제조·판매 이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공직선거용 투표용지 제작도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폐공사법이 아니라 결국은 선관위가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책적으로 이것을 허용을 할지 말지 결정할 사항이어서 결국 조폐공사법 개정의 실익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관위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선관위는 아까 전문위원 말씀 주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유보적인 입장이어서 저희들은 실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숙 위원 정부 측에 동의합니다.

○서병수 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는 ‘각종 유가증권 및 공직선거 투표용지의 제조’ 이건데요. 그렇지 않아도 조폐공사가 사실 과거의 전통적인 상품을 만들어 내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축소되는 경향이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경영 관리상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

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새로운 상품들을 개발해 내는 그런 것은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직선거 투표용지는 지금 안 그래도 사람들 사이에서는, 일부기는 하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불법 투표용지에 관한 의심을 계속 해서 제기하고 있는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공직선거 투표용지를 각 시군구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인쇄소를 지정해서 거기에 맡겨서 오는 것을 보관해 가지고 나중에 개봉해서 투표에 사용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관리가 될 것인지에 대한 염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투표용지를 한꺼번에 다양한 색깔로 여러 장을 짧은 시간 안에 인쇄해서 배부해야 되지 않습니까? 만일에 조폐공사가 그런 능력만 된다면 조폐공사에서 하는 것도 괜찮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제과장 김용권 위원장님, 중앙선관위 법제과장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지금 혹시 선관위에서 나오신 분이 계신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제과장 김용권 예.

○서병수 위원 이야기해 보세요.

○소위원장 류성걸 누구시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제과장 김용권 중앙선관위 법제과장 김용권입니다.

조폐공사 개정법안에 대해서 선관위 의견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예, 말씀하세요, 선관위 의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제과장 김용권 잠깐 간단하게 언급돼서 이게 현실적으로 와닿지가 않을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투표용지 같은 경우에는 후보자의 사퇴라든가 등록무효 사유 등을 투표용지에 반영하기 위해서 최대한 선거일에 가깝게 인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법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투표용지를 납품받아서 그것을 검수하고 실제 해당 읍·면·동 위원회 투표관리관에게 분배하는 그런 기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쇄소에서 인쇄할 수 있는 기간은 대선이나 국선 같은 경우에는 3일 그다음에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10일입니다.

그런데 지방선거를 예로 들자면 그 10일 기간 동안에 인쇄해야 할 투표용지의 종류가 2366종입

니다. 과연 조폐공사가 그 10일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2366종의 투표용지를 진짜 착오 없이 인쇄할 수 있을지……

○서병수 위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오신 분, 그런 것은 여기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조폐공사가 할 일이고 조폐공사가 그것을 감당 못 하면 못 하는 거지 선거관리위원회가 조폐공사의 기능에 관해서 할 수 있다 없다, 기술적인 것을 여기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법은 조폐공사의 업무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조폐공사법의 개정에도 관한 것이지, 선거관리위원회법을 바꾸든지 지침을 바꾸든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알아서 하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을 무슨 기술적인 문제를 들어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와서 여기에서 조폐공사가 이걸 할 수 있느니 없느니 평가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봐요.

○소위원장 류성걸 혹시 조폐공사에서 담당자 오신 분 있나요?

양경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양경숙 위원 이 법은 우선 중앙선관위에 대한 불신의 생각을 가지고 제출한 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선거가 1년에도 몇 번씩 되는 경우도 있고 보궐선거 대통령선거 또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 인쇄를 잘못했다든지 인쇄 기한을 못 맞춰서 선거에 차질을 빚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저희가 국정감사도 했습니다만 한국조폐공사가 선관위보다 훨씬 더 우위에 있는 그런 시설과 개념을 갖고 있다고 생각 안 해요. 불리온 사업 같은 경우에도 잘못 수주를 줘 가지고 200억 가까이 손실 본 것 아닙니까? 이런 조폐공사에 이 중요한 전국적인 선거의 투표용지를 인쇄하게끔 법까지 개정해서 만들어야 된다는 그 발상 자체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선관위 의견하고 기재부 의견이 들어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지 안 한지는 실제로 업무를 추진하는 조폐공사의 의견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조폐공사의 의견을 한번 들어 봤습니까, 차관님?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중요한 것은 조폐공사는 오더만 나오면 지금도 법에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선관위가 의사결정을 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기 때문에 이것은 그래서 저희가 실익이 없다는 거거든요. 지금도 언제든지 오면, 조폐공사는 이것 때문에 못 하는 게 없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그러니까 물량이라든지 또는 인쇄를 해야 되는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조폐공사에 그런 것까지도 의견을 들어 봤느냐는 말씀이에요.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기획재정부국고국장 유형철 방금 차관님 말씀하신 것 그대로입니다. 지금 조폐공사에서는 이 개정안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이견이 없다는 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의견이 없다는 말이에요? 이견이라는 건 여러 가지……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현실적으로 아마 선관위가 구체적으로 무슨 안을 줘야 그쪽에서도 견적이나 뭐가 되는 건데 그게 없는 상황에서 지금 조폐공사보고 할 수 있냐 없냐는 구체적인 사양에 따라 많이 달라질 것 같고요.

○소위원장 류성걸 그러면 선관위에서는 오늘 어떻게 누구의 요청으로 나오셨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제과장 김용권 또 하나 더 말씀드릴 건……

○소위원장 류성걸 잠깐만요, 선관위 직원이 오늘 누구의 요청에 의해서 나오셨느냐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제과장 김용권 기재부 쪽에서 저희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그러면 기재부에서는 선관위하고 이야기를 하고 관련되는 의견이 일괄하여 인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조폐공사의 의견을 한번 들어 보셨나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저희는 지금 선관위의 일괄해서 할 수 있냐 없냐보다도 선관위가 할 거냐 말 거냐, 공직선거법에서 할 거냐 그게 전후에 있어서 저기서 뭐가 결정이 나야 여기서 논의가 필요하다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그게 아니고 법이 들어가면 하는 거지요. 그래서 법 전에……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법이 들어갔다고 저는 할 수 있다고는 생각 않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물론 할 수 있는 그런 거니까 선관위가 최종적으로 발주를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선관위 의견은 좀 이따가 이야기를 하시고, 선관위는 지금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나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제과장 김웅권 지방선거에서 2366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공직선거법 개정안 중에 시·도교육감 선거에서처럼 기초의원 선거에서도 후보자별 게재 순위를 교차되도록 하는 그런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정안이 만약에 입법화되면 지방선거에서의 투표용지 종류는 단순히 2366종이 아니라 그것보다 한 4000, 5000종으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투표용지의 위·변조를 방지해서 선거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게 입법 제안 취지인데 실제 지난 2021년 3월에 공직선거법 개정이 돼서 사전투표해서 가져온 투표지를 보관하는 장소에 CCTV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등 이미 일부에서 의혹을 제기했던 그런 부분에 대한 입법 개선이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는 것은 투표용지의 위·변조 방지를 위해서 투표용지에 은선이나 은화, 홀로그램 등을 삽입하는 방안이 아마 위·변조 방지 기술로 검토될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개표소에서 투표지 분류기를 이용해서 투표지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투표지 분류기가 광학스캔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만약에 위·변조 방지를 하기 위한 이런 게 들어갔을 때 과연 분류기가 제대로 작동을 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위원님들, 추가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서병수 위원 저는 그런 기술적인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것은 조폐공사에서 할 수 있으면 하는 거고 못 하면 못 하는 거고, 다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것을 어디에다가 맡길 것인가, 정말 신뢰성 있는, 공신력 있는 그런 인쇄소에다가 맡겨서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국민들의 어떤 불신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국장님, 보통 조폐공사에서 여권을 인쇄하는데 그 부분은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관련 조문 제11조(업무)에 관련된 사항 아니면 시행령이나 다른 어디에 여권 관련된 내

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기획재정부국고국장 유형철 조항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소위원장 류성걸 천천히 찾아보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제가 보기에는 11조 1항 7호의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소위원장 류성걸 그런데 거기 업무보고 때 여권이라고 명시가 돼서 업무보고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속에 정부가 위탁을 줬던 그 관련되는 근거가 있습니까? 여권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금 거기서 만들고 있지요?

○서병수 위원 ‘한국조폐공사의 업무는 다음과 같음’ 해서 1, 2에서 3, 9까지 쪽 있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 있지 않나요? 그러리라고 보는데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예.

○서병수 위원 제가 볼 때 조폐공사의 업무는 딱딱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는 것 같아요.

○소위원장 류성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명시적으로 법에 안 넣더라도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이때 정부는 행정부가 아니고 선관위를 포함하는 그런 정부인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저는 중앙정부 같은데요. 1조(목적)를 보면 ‘정부·지방자치단체 등이……’ 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분리해 봤기 때문에 이걸로 봐서는 중앙정부……

○소위원장 류성걸 그러면 헌법기관은 포함이 안 되나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그것은 한번 좀 더……

○소위원장 류성걸 그래요, 그건 한번 알아보시고.

왜냐하면 법에다가 명시를 해서, 지금 현재 개정안처럼 명시를 해서 ‘공직선거 투표용지의 제조’—이것은 할 수 있는 업무니까 그런데—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지금 제11조(업무)에 나오는 어디인가는 모르지만 여권처럼 실제로 여권의 위·변조 포함해서 외교부가 위탁을 하든지 아니면 계약을 맺든지 이렇게 할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했을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거기의 예에 따라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요.

실무자, 확인했습니까?

○기획재정부국고과장 강대현 예, 위원장님, 국고과장 강대현입니다. 방금 질문 주신 것 말씀드

리겠습니다.

조폐공사가 여권을 제조하는 것은 제11조제1항 제5호의 다목에 보면 ‘위·변조 방지용 보안요소’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그다음에 제7호에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이게 여권을 제조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된다고 그러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정부는 중앙정부가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중앙정부라 함은 선관위나 헌법기관이 포함되지 않습니까?

○기획재정부국고과장 강대현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그래서 이것 관련되는 사항은 찬반이 상반된 의견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계십니까? 없으면 제70항까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역원 제1차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국회 직원 및 보좌진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3분 산회)

○출석 위원(8인)

김 두 관	김 태 년	류 성 걸	서 병 수
서 일 준	양 경 숙	정 운 천	정 일 영

○청가 위원(1인)

우 원 식

○출석 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정	연	호
-------------	---	---	---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기획재정부

제 1 차 관	이	억	원
국 고 국 장	유	형	철
재 정 혁 신 국 장	나	주	범
재 정 관 리 국 장	한	경	호
조 세 총 괄 정 책 관	고	광	효
법 송 무 심 의 부 관	김	의	래
국 가 정 보 원 관	0	0	0
법 준 법 심 의 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측 참석자

법 제 과 장	김	용	권
---------	---	---	---